

<b>사업명</b>
(1)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28,339	28,339	28,339	30,916	30,916	2,577	9.1

### 4. 사업목적

- 국내 유일의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 지원
  - 비수익적이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시청자 권익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p>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p>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p> <p>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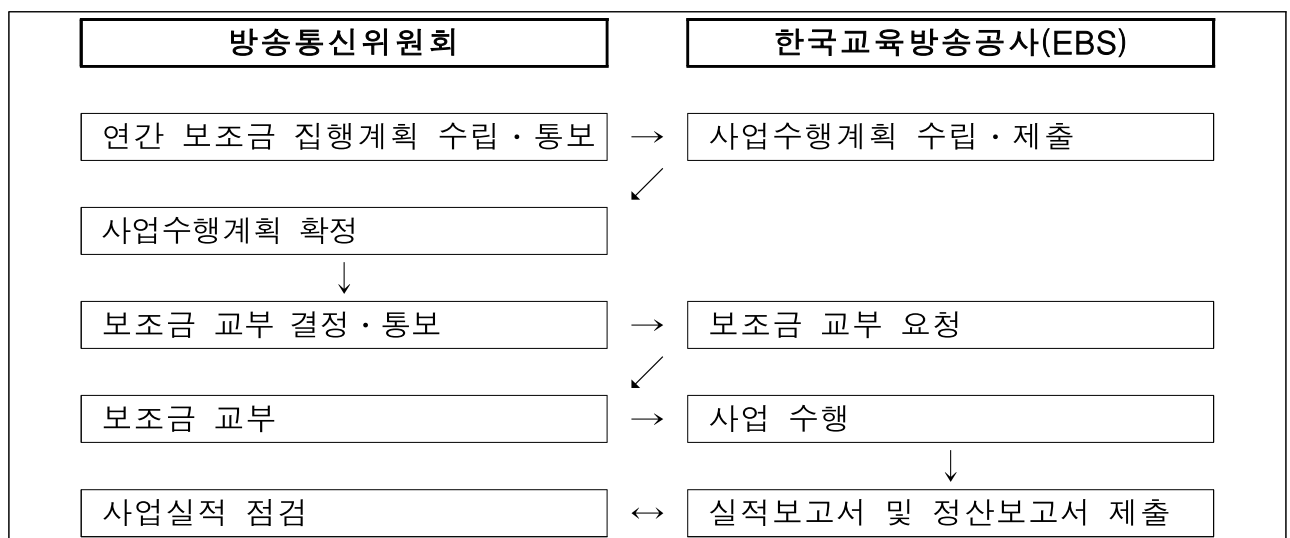
- 추진경위
  - '00. 1월, 방송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
  - '00. 11월,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작
    - 법률상 가장 기본적인 운영재원(방송제작 및 송출 등) 지원
  - '05. 1월, 영역별 프로그램 제작지원
    - 유아·어린이, 청소년, 교양문화, 학교교과, 평생교육 등
  - '14. 1월, 라디오 독서교육 프로그램 제작비(2억원) 신규 반영
  - '15. 1월, 초중학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비(20억원) 신규 반영
  - '16. 1월, 2TV 프로그램 제작비(20억원) 신규 반영
  - '19. 1월, 동남아언어교육프로그램 제작비(5억원) 신규반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사업 수혜자 : 방송 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액지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2)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37,156	35,447	35,447	22,987	22,987	△12,460	△35.2

### 4. 사업목적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방송을 통해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한국을 알리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국내거주·방한 외국인 대상, 영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우리문화 및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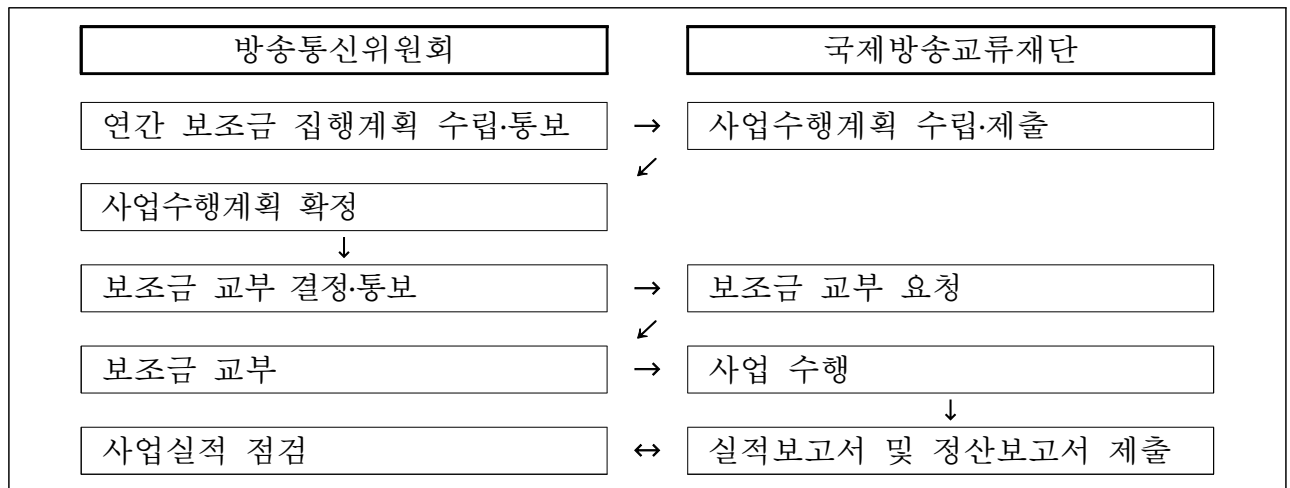
- 추진경위
  - 해외에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국제방송교류재단 설립('96, 공보처)
  -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 주재 「영어 라디오방송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결과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2003년 제주에서 영어FM방송을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제방송교류재단
- 사업 수혜자 : 아리랑TV 시청자 및 제주 영어FM 청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방송교류재단	정액보조	-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3) 국악방송지원 (3131-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4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국악방송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국악방송지원	5,094	6,700	6,700	6,370	6,370	△330	△4.9

### 4. 사업목적

- 상업방송에서 소외된 국악 및 전통문화의 방송편성으로 방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 활성화에 기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및 제6호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추진경위
  - 2000. 2.14. : 재단법인 국악방송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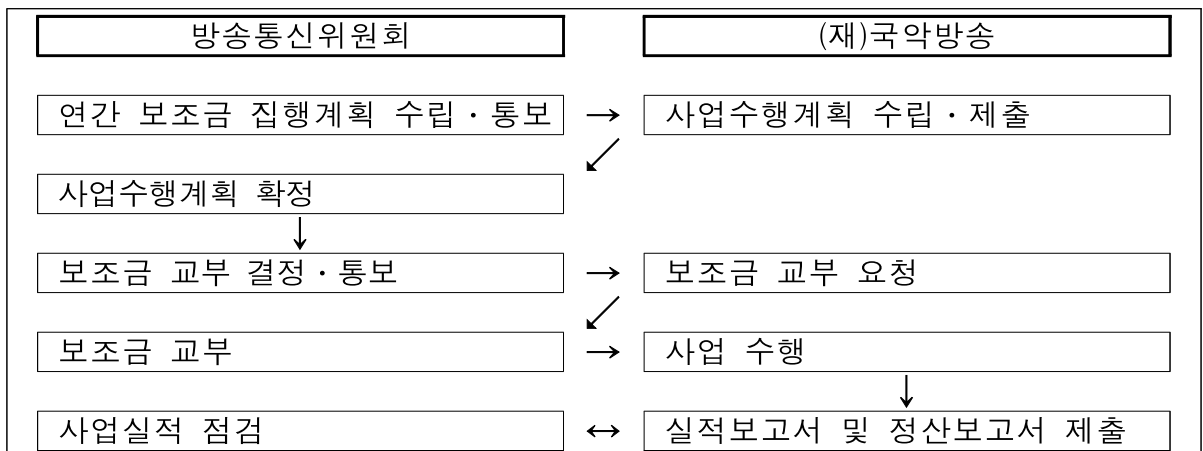
- 2001. 3. 2. : 국악FM방송 개국(서울·경기일원 방송)
- 2001. 6. 1. : 남원중계소 개소(전북 남원일원 방송)
- 2006. 7. 6. : 남도중계소 개소(전남 진도일원 방송)
- 2010. 4. 7. : 경주중계소 개소(경북 포항·경주일원 방송)
- 2011.10.27. : 전주중계소 개소(전북 전주일원 방송)
- 2011.11. 8. : 부산중계소 개소(부산일원 방송)
- 2012.12.14. : 강릉중계소 개소(강원 강릉 일원 방송)
- 2012.12.30. : 대구중계소 개소(대구 일원 방송)
- 2014. 3.26. : 광주국악방송 개국(광주 일원 방송)
- 2015.12.29. : 제주국악방송 개국(제주 일원 방송)
- 2015.12.29. : 서귀포국악방송 개국(서귀포 일원 방송)
- 2017. 7.14. : 대전국악방송 개국(대전 일원, 세종 일부 방송)
- 2019. 3.13. : 충주국악방송 개국(충주 일부)
- 2019. 3.13. : 영동국악방송 개국(영동 일원 방송)
- 2019.12.27. : 국악방송TV 개국(kt올레tv ch.251)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국악방송
- 사업 수혜자 : 라디오 및 영상 채널 시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국악방송	정액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4)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5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8,712	7,841	7,841	7,841	7,841	-	-

### 4. 사업목적

○ 방송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사회교육방송과 대외방송의 운영 보조

- 사회교육방송 : 외국거주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
- 대외방송 : 국제친선 및 이해 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54조(업무)

-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② 국가는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법 제61조(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48. 8월, 국영방송으로 출범

- '73. 3월, 한국방송공사로 출범 이후 매년 국고보조금 신청

- '05. 12월, 국회 예결위, '06년 예산(안) 편성시 KBS 사회교육 및 대외방송 예산지원 결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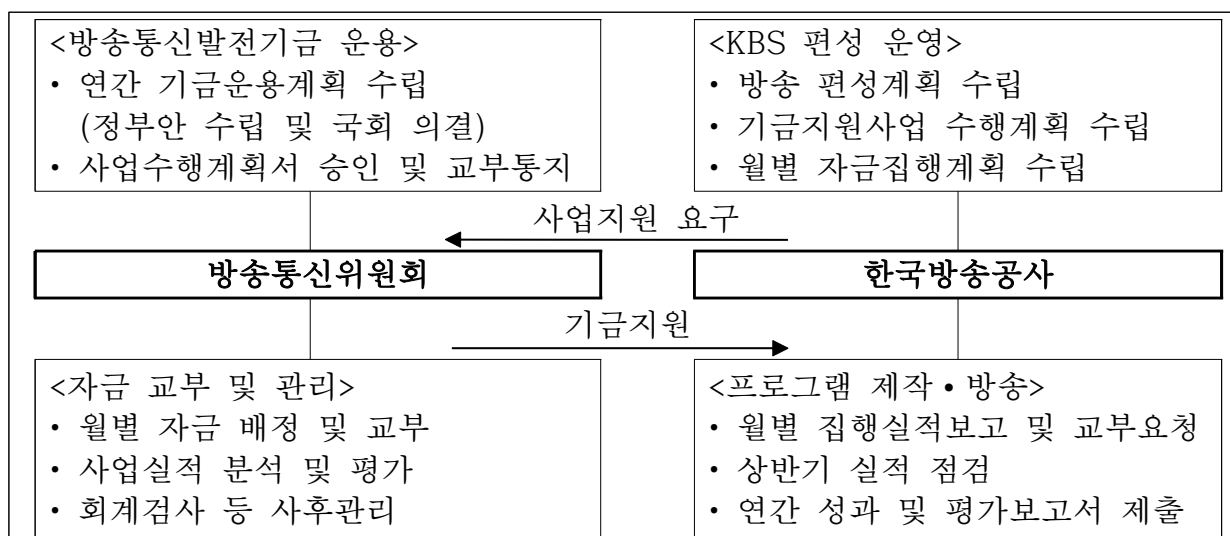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공사

○ 사업 수혜자 :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한국 문화·경제 등에 관심있는 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공사(KBS)	정액지원	방송법 제 54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5)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1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인프라지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지역·중소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4,100	4,030	4,030	4,030	4,030	-	-

**4. 사업목적**

- 지역·중소 프로그램 제작지원,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공성·다양성 구현, 지역 시청자 권익 보호, 지역문화 창달 등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항, 제2항 제6호, 제8호, 제4항 및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방송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 제1항

**제22조(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의 다양성·지역성 구현과 관련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3호, 제5의2호, 제6호, 제15호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 ○ 추진경위

- '12.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에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마련
- '12. 8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발의(국회 미방위)
- '14. 2월,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추진\*
- \* 사업명 변경: 지역성·다양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지원(14년)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15년)
- '14. 11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국회 미방위)
- '14. 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 '15. 11월, ‘제 1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 '17. 12월, ‘제 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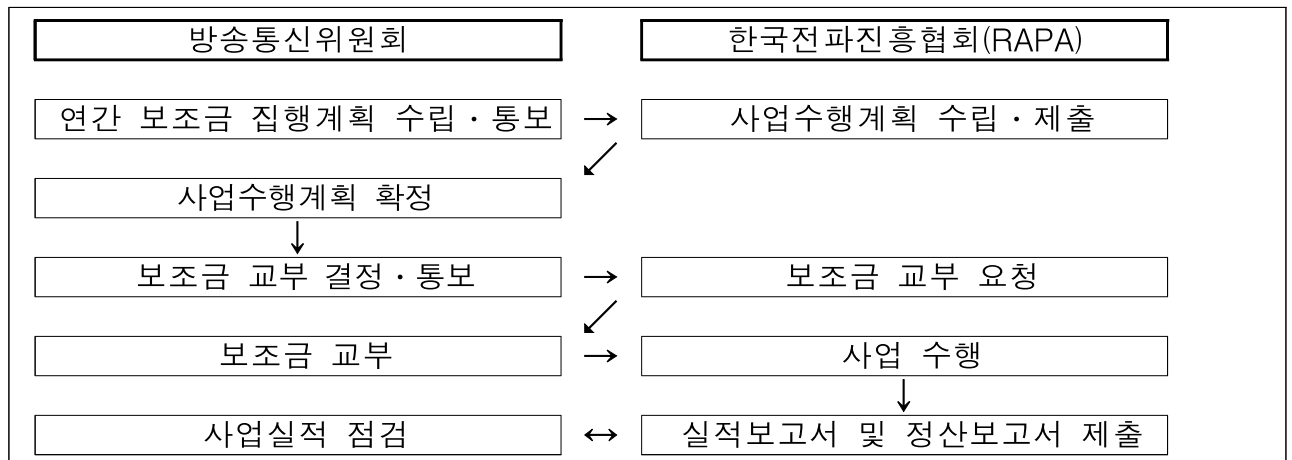
※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5대 추진전략 : ①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②콘텐츠 유통 촉진, ③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 ④재정안정 지원 제도기반 조성, ⑤경영환경 구조 개선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 사업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사 및 지역 시청·청취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액지원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6) 미디어다양성 증진 (313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확보	미디어다양성 증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미디어다양성 증진	4,916	4,916	4,916	3,933	3,933	△983	△20.0

### 4. 사업목적

- 시청점유율 제한 규제\*(방송법 제69조의2)의 시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산정
  - \*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되, 방송시장의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국민들의 TV 시청행태가 고정형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VOD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에 대한 TV시청기록을 조사하여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기반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 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시청점유율을 제9조에 따른 허가·승인, 제15조의2에 따른 변경승인,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등의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청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추진경위

- '09. 7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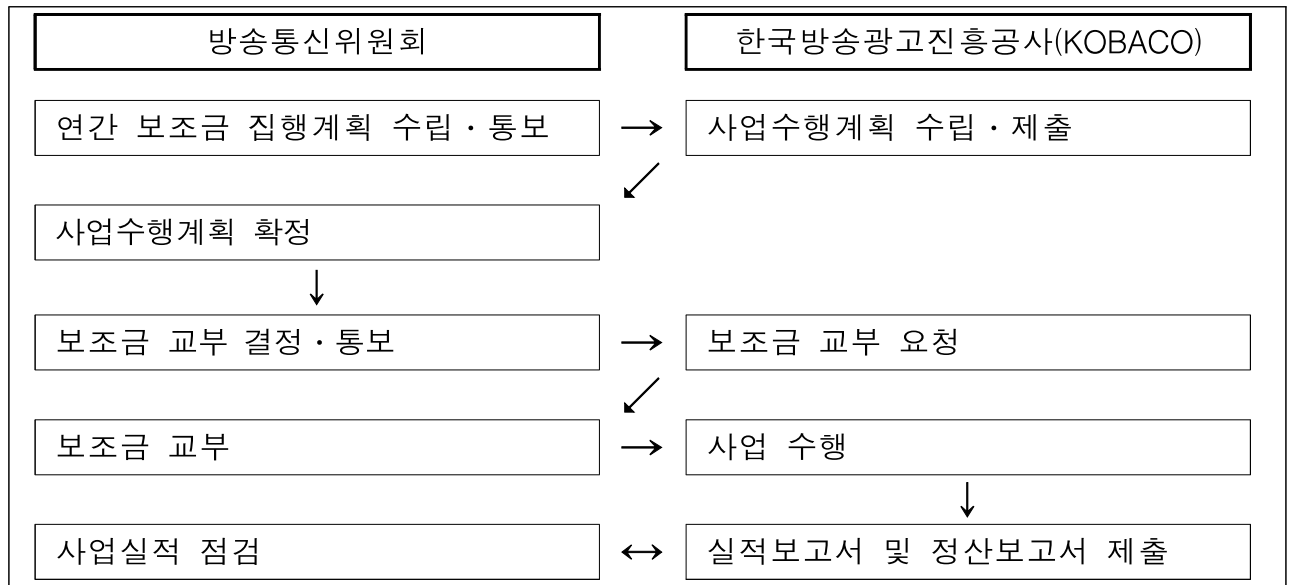
- '11~'20년, '10~'19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방송사업자, 광고주·광고대행사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제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7)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132-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379	379	379	379	379	-	-

**4. 사업목적**

-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방송(IPTV 포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 방송시장의 시장지배력 수준을 측정·평가하여 시장 경쟁상황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정책을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 ① 정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는 「방송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가 실시한다.

### ○ 추진경위

- '10.3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송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근거 마련
- '10.~11.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예비 연구 수행
  - ※ '10년 및 '11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실시(정책연구 예산)
- '11. 7월 방송법 개정
  -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35조의5)
- '12. 1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시행
- '13.~'20.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 국회 보고(매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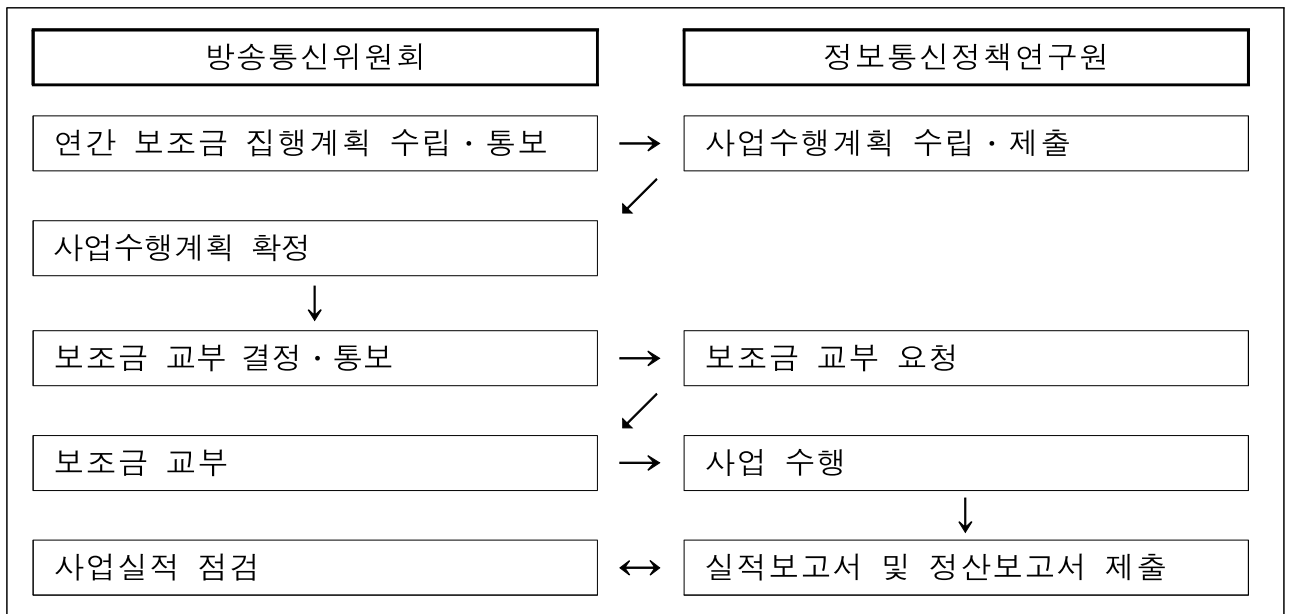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방송사업자,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상황 조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공정경쟁의 촉진)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8)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3132-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100	1,100	1,100	1,550	1,550	450	40.9

**4. 사업목적**

- (음성인식 기반 자동·자막방송 시스템 개발) 소외계층의 신규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한 자동 자막 및 수어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
-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단계별 개발에 따라 시범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대상 의견수렴 등 미디어 접근환경 조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

-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 추진경위

- '18. 4월 국민 사업 제안 및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제안명)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용 방송수화, 자막 시스템 개발

(제안내용) 유료방송과 VOD, 인터넷 등 신규미디어에서 아직 자막, 수화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하여, 최근 발전된 인공지능과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한 자막 및 수화방송을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 개발 요구

- '18. 5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18. 5월~ 예산 요구 및 제안사업 논의(예산국민참여단 발족)
- '18. 8월 제안사업 선정 및 정부 예산 반영
- '19. 1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착수
- '19.12월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1차 시제품 제작 및 청각장애인 대상 사용성 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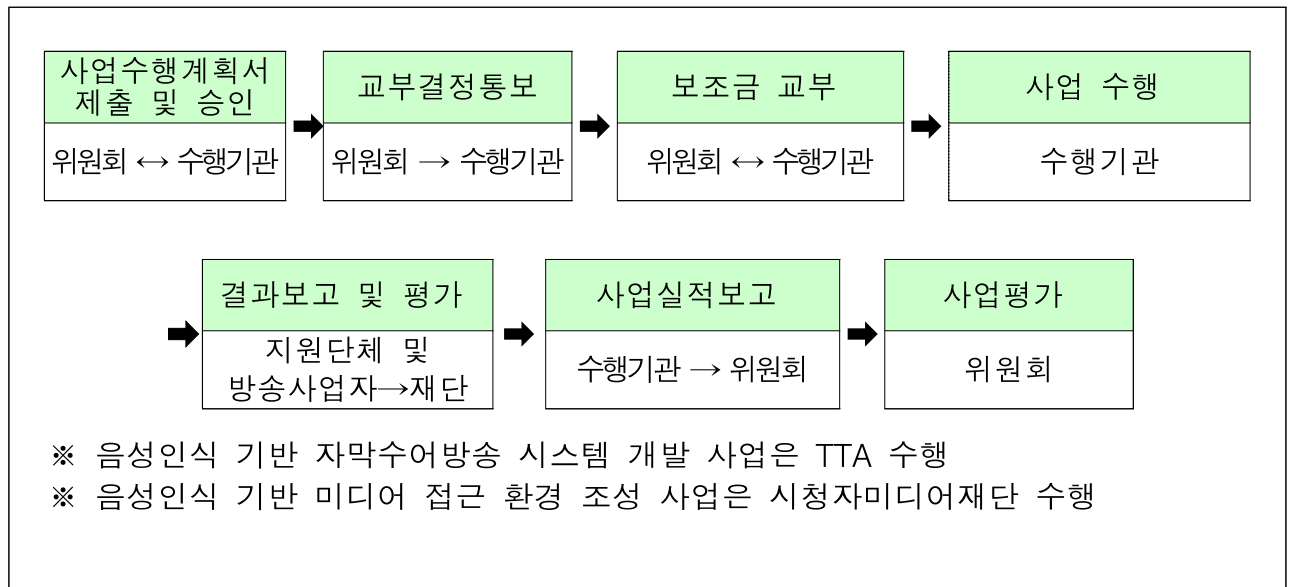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방송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음성인식 기반 자막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음성인식 기반 미디어 접근 환경 조성)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9)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3132-308)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8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11,618	10,911	10,911	10,911	10,911	-	-

### 4. 사업목적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방송 의무화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매칭 지원하고,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평가를 시행하며,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및 발달장애인 방송물 보급 지원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수어영상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운영 등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추진경위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시작
- '06년                    방송수신기 활용 실태조사 실시
- '15.~'17년            저소득층 보급 확대를 위한 광역시·도 지자체 MOU 체결
- '19년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용 TV 누적보급률 83.5% 달성  
(시청각장애인 대상 19만3천대 보급, 그 중 저소득층 8만4천대 보급)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06~'08년            지상파방송사 및 공익 PP 지원('06년 9사, '07년 22사, '08년 28사 지원)
- '08.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 '11년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화('11.7월 방송법 개정),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11.12월)
- '19. 1월                장애인방송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3호) 일부개정

#### [시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기반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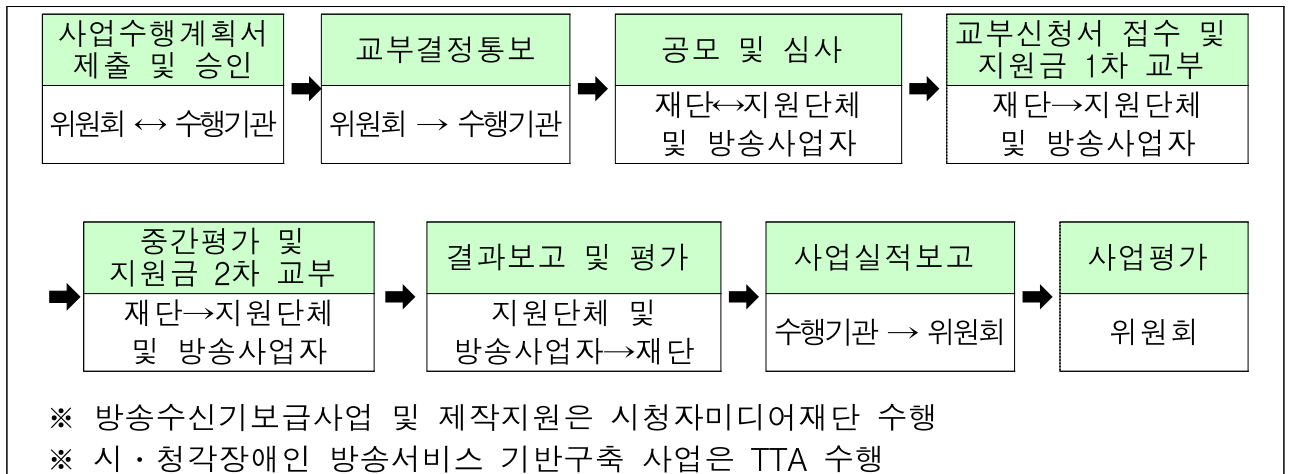
- '14.11월                지상파(KBS) 실험방송 실시 및 기술방식 검증
- '14.12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기술표준안 개발 완료
- '15. 4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송·수신정합 기술표준 제정
- '15.11~12월            유료방송 매체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실험방송 실시
- '16~'18년            참여사업자 확대 및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시범방송 실시
- '19. 7월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개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청각장애인방송서비스기반 구축)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10)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3132-309)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09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언론중재 위원회 지원	12,304	12,753	12,753	12,756	12,756	3	0.02

### 4. 사업목적

- 방송·인터넷포털 등의 언론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교육 등 사전 분쟁 예방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제고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財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81. 3. 「언론기본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조정 및 심의업무 실시
  - '87.1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근거법률 변경
  - '00. 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05.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정 외 중재업무 실시
  - '09.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피해구제 대상매체 확대
    - ※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 '10. 1.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 선거에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언론중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언론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당사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언론중재위원회	10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132-31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3,672	34,667	34,667	36,221	36,221	1,554	4.5

### 4. 사업목적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및 법정직무 수행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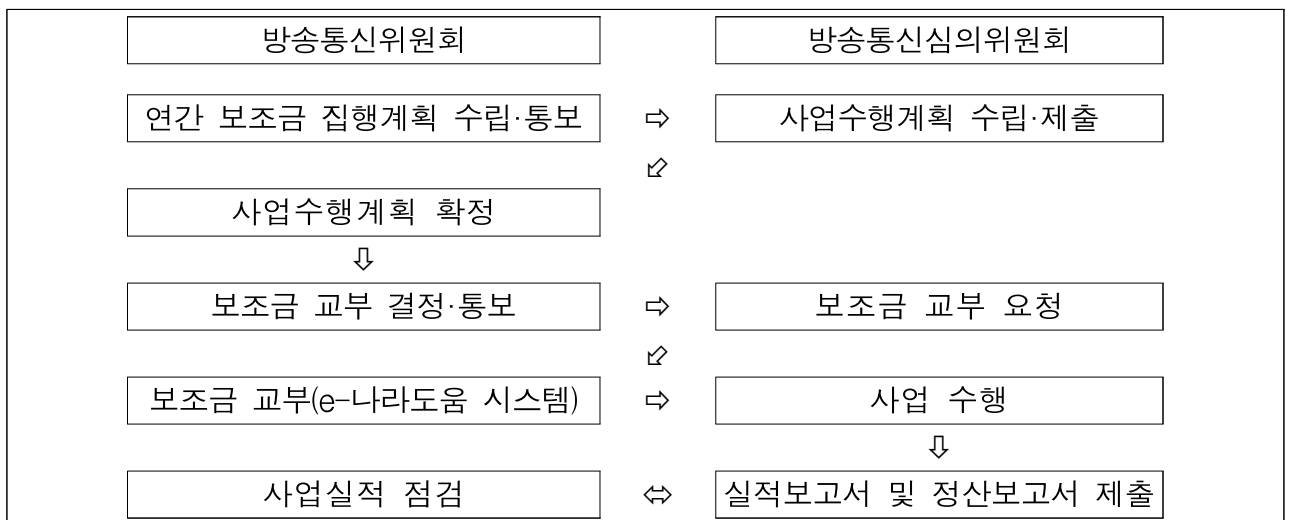
- '08.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 '08. 5.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출범
- '11. 5.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구성 및 출범
- '14. 6.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구성 및 출범
- '18. 1.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구성 및 출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예산) 등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12)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3132-31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	1,595	1,688	1,688	1,705	1,705	17	1.0

**4. 사업목적**

- **(모니터링 분석시스템 구축·운영)**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처분을 통해 과도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강화
  -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제74조(협찬고지) 및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제59조의2(가상광고), 제59조의3(간접광고), 제60조(협찬고지)
  -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및 제4항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광고시간, 가상광고, 간접광고,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관련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인력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정부지원의 필요성]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협찬고지 형식규제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규제]

#####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 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 방송법 제74조(협찬고지)

①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 법규위반에 대한 사후제재 ]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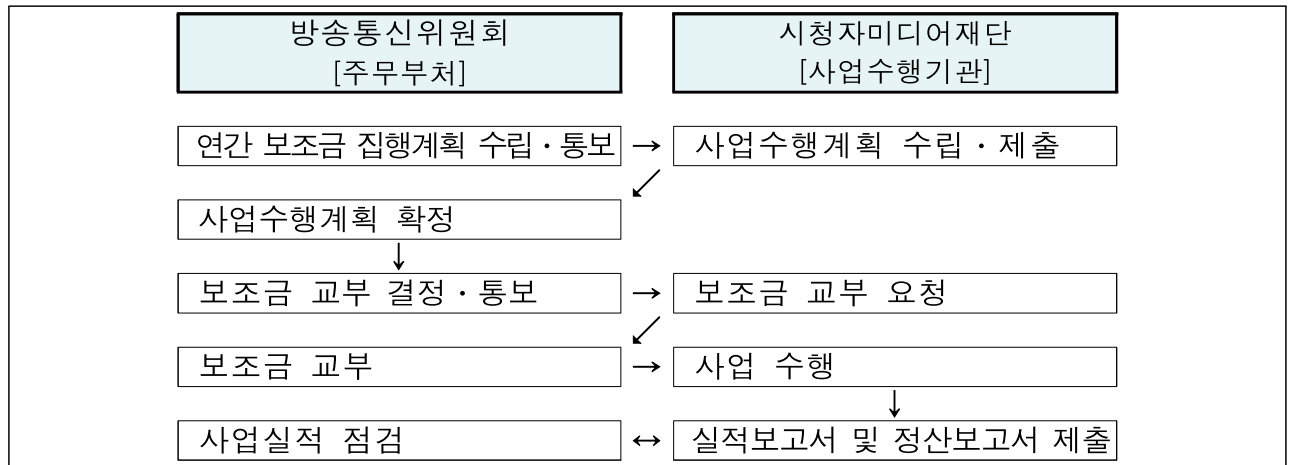
- '09. 05 :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업무 중앙전파관리소 위임
- '10. 10 : 방송광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중관소에 위임
- '13. 03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관소 위임을 위탁으로 변경
- '14. 01 :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이관
- '14. 11 :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 방송통신위원회로 환원
- '15. 05 : 시청자미디어센터 법인 설립 근거를 담은 방송법 시행에 따라 방송광고 모니터링 업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이관
- '16. 05 : 협찬고지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법규 준수 여부 조사 실시
- '18. 10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4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방송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13)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3132-31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	669	679	679	682	682	-	-

### 4. 사업목적

- (중소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불공정행위 행태개선) 방송법 등의 금지행위 제도\* 시행에 따라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의 사업자간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상시적인 시장 감시 체계 구축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등
- (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 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회계자료 검증을 통한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 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7.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8.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금지행위)

-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2. 이용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절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
  6.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서비스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2항에 따른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7조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방송법 제76조의3(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 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추진경위

- '08. 2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시장에 대한 감시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자료 검토·분석 업무 강화
- '08. 4월, IPTV 및 IPTV콘텐츠 사업자 등에 대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1월, 유료방송사업자 및 PP 등에 대한 방송법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방송사업자, 광고판매대행자, 광고대행자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의 금지행위제도 시행
- '12. 5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 11월,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12. 7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2.12월,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13.12월, 유료방송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14. 1월, 유료방송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이용약관 개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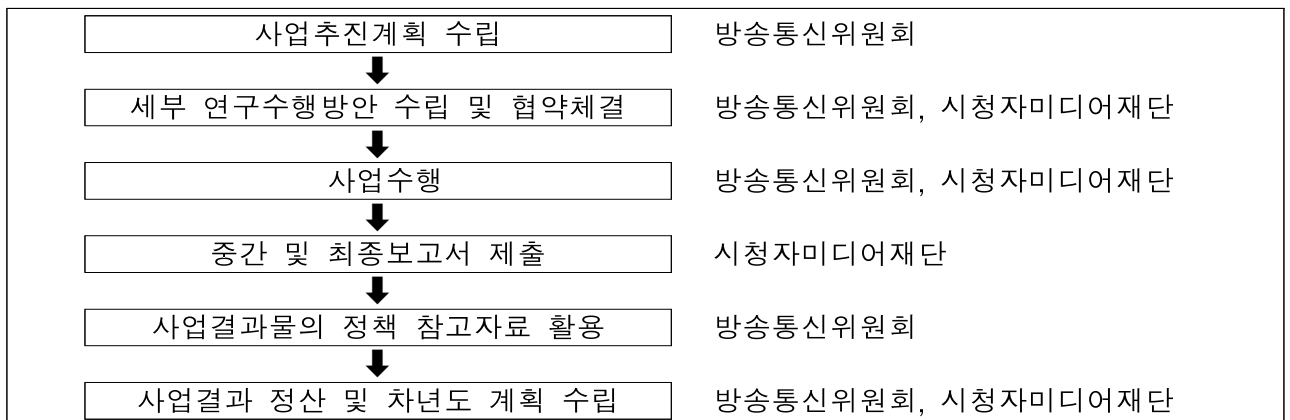
- '14. 7월,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지연지급 관련 시정조치
- '14.10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15. 3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개정
- '15.12월, 홈쇼핑PP의 납품업체 대상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 '16.12월,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관련 시정조치
- '17. 9월,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17.11월,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제도 개선
- '17.12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 '18.10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차단 관련 시정조치
- '18.12월,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 '19.10월, 프로그램 사용료 과다지급 관련 시정조치
- '20. 6월, 방송광고판매대행사 거래조건 차별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중소방송사업자 대상 공정경쟁실태 서면조사,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14)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132-31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확보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250	300	300	300	300	-	-

### 4. 사업목적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사 대상 외주제작 실태 조사 실시
- (외주제작 제도 점검 지원)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물 인정 및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점검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p>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li> <li>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li> <li>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li> <li>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li> <li>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li> <li>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li> </ol>
---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8조 제5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방송사업자의 방송 실시결과 감독 및 의무편성비율 위반사항 제재조치</li> <li>10. 외주제작 활성화 및 육성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li> <li>11.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li> <li>12. 외주제작 산정기준의 고시 및 실태 조사·분석</li> <li>13.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의 제정·개정 및 운용</li> </ol>
--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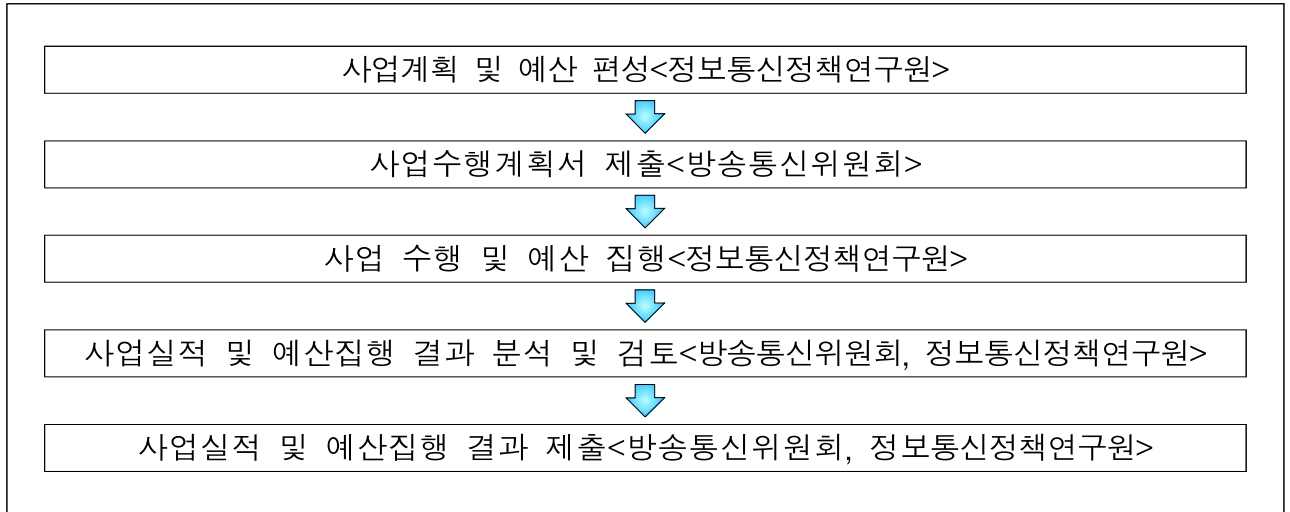
- '91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제도 도입  
 ※ (도입배경) 제작주체 다원화, 수용자 복지실현, 영산산업 육성발전 등
- '17. 7. 14. : 독립 PD 아프리카 촬영 중 사망
- '17. 8. 22. : VIP, 실효성 있는 외주제작 공정거래 대책 마련 지시
- '17. 8 ~ 11월 :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구성,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점검 실시
- '17. 12. 19 : 방통위·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공정위 5개 부처 합동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국무회의 상정)
- '19. 7. 17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15)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3132-31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2	31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미디어다양성및공공성 확보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	610	610	2,740	2,740	2,130	349.2

### 4.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허위조작정보가 생산·유통·확산되지 않도록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 마련
- (팩트체크 전문역량 강화) 전국민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역량 강화를 위해 팩트체크 교육 지원 및 국내외 팩트체크 조사 분석 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및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운영원칙)**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26조(기금의 용도)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제40조(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여,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2. 정보통신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3. 정보통신윤리 관련 연구 및 개발
4. 정보통신윤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건전한 정보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 추진경위

- 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18년)
  - 인터넷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가 확산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팩트체크 활성화가 제시되었고, 관련 시스템 및 기술이 개발될 필요성을 제안
-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19년)
  - 플랫폼사업자·시민·언론·정부 등 분야별 제안사항을 마련하여 발표, 발표 내용 중 정부에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 조성 필요성을 제안
- 국무회의,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경계의 대상' ('19.8월)
  - 근거 없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는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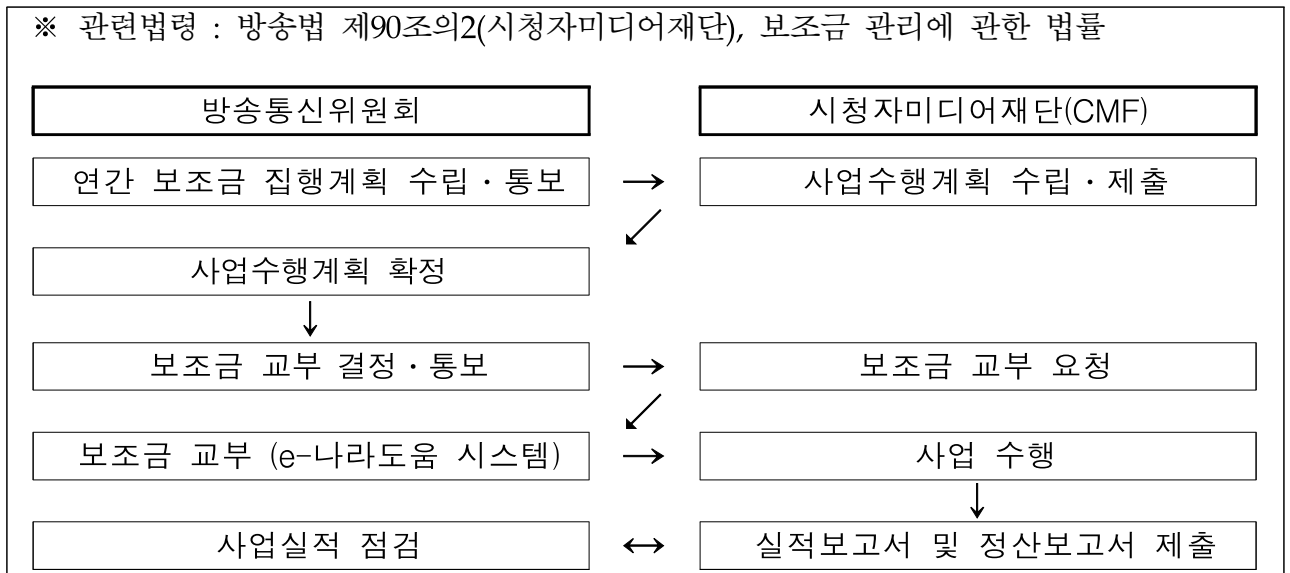
- 국회 예결위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세부사업 추진 요청('19.12월)
-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으로 사회 구성원 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활성화 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법 제90조의2 제7항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16)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313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지원	1,520	1,520	1,520	1,520	1,520	-	-

**4. 사업목적**

- 시청자가 제작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시청자평가원 활동을 통해 시청자 권익증진 및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교육 지원
--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 ⑦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 ⑩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참여프로그램)

- ① 법 제6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②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2(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70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 ⑦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89조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89조(시청자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및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해 지원

<지상파방송 지원>

- 2001 : KBS의 경우 방송법 제69조제7항에 의해 매월 100분 이상 편성 의무화 사업자로 '01년부터 제작 지원
- 2005 : 지역 지상파방송사로 지원 확대
- 2011 :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를 위해 공동체라디오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 2002 : 시민방송에 대한 방송채택료 및 제작비를 직접지원
- 2003 : 방송법 제70조제7항에 의해 종합유선방송 방송채택료 지원 시작
- 2009 :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통하여 시민방송을 포함한 일자리방송 등 6개 PP를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지원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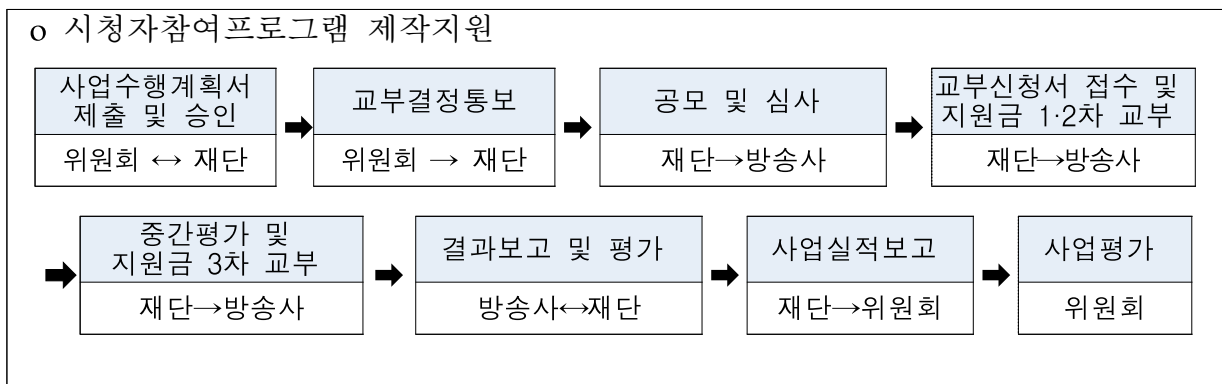
- 2000 : 방송법 제정(2000.1) 이후 시청자평가원 활동경비 지원
-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목 표 :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 주요내용 :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및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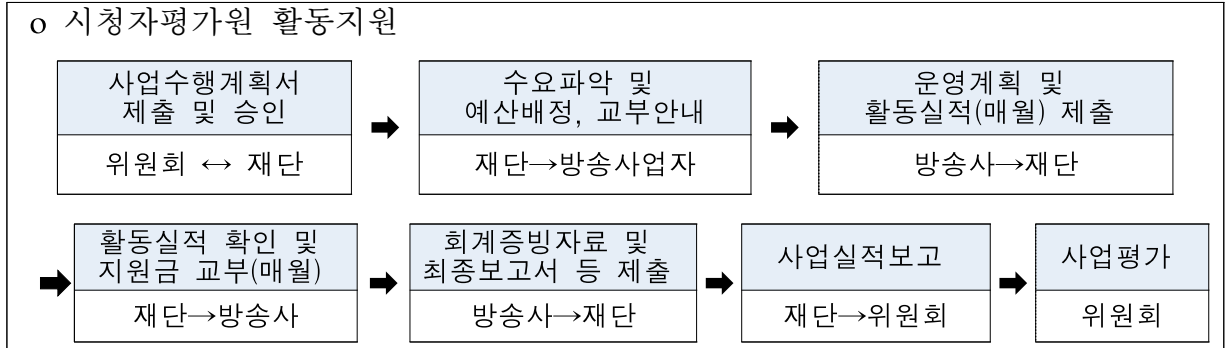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민(시청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청자 및 시청자평가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 재단을 설립한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7. 사업 집행절차



o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b>사업명</b>
(17)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3133-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24,194	19,812	19,812	18,136	18,136	△1,676	△8.5

### 4. 사업목적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
-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시청자 대상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 미디어 격차 해소 제공 등 시청자의 창의적 미디어활용 활성화 및 미디어복지 제공
-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비대면의 일상화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 국민 대상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
-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마련) 지역적 격차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 제공과 시청자의 원활한 방송참여, 미디어교육 접근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인프라 조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 추진경위

-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 - 사업경과

- '05년 11월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6년 1월 :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시행을 통한 미디어교육 체계화 모색
- '07년 11월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09년 1월 : 미디어센터운영 및 시청자지원 사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 운영/관리
- '12년 1월 : 시청자 권익보호 활동지원 사업 시행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지원 사업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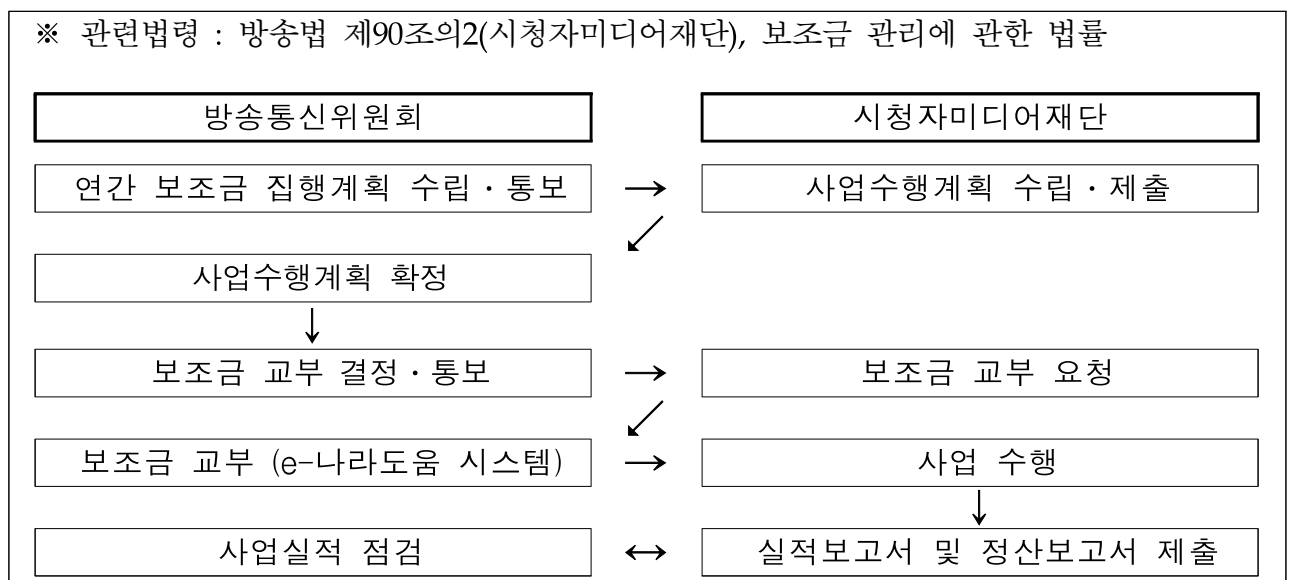
- '14년 7월 : 대전·강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4년 8월 : 인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 '15년 5월 : 시청자미디어재단 법인 설립
- '15년 11월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6년 2월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16년 11월 :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19년 11월 :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20년 12월 : 충북·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전국민 대상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지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
- 사업 수혜자 : 전국민(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시청자미디어재단	100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제7항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7·8·10호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18)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133-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4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200	200	200	200	-	-

### 4. 사업목적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의 공익성·지역성 기반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 제6호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 국정과제 70-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18.12)

### ○ 추진경위

- 2017년 : 현정부 국정과제 선정(국정과제 70-2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 2018년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방안」 마련('18.12월)
- 2019년 : '20년도 신규 예산사업 확정('19.12월)
- 2020년 :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개시

※ 총 21개 프로그램(7개 방송사) 선정 및 제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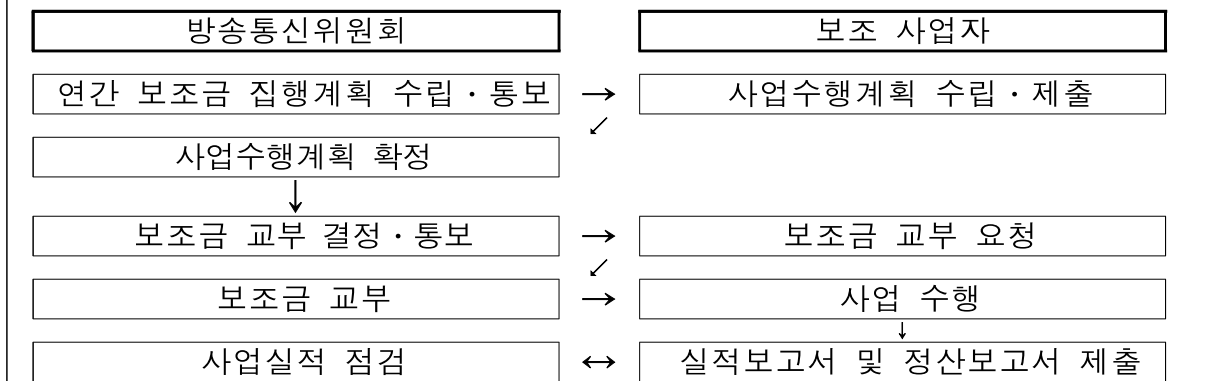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공동체라디오사업자, 라디오 청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조사업자	정액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 7. 사업 집행절차

※ 관련법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5항·6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b>사업명</b>
(19)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3134-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305	310	310	310	310	-	-

### 4. 사업목적

-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방송제작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청자의 만족도 향상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5.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8조(방송기반국)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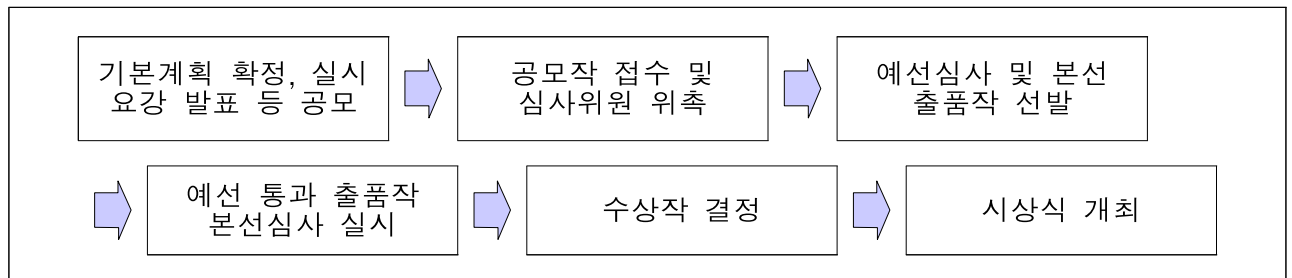
19. 우수 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시행

- 추진경위
  - '96년 방송위원회 대상 제정 및 시상
  - '00년 舊 방송위원회가 방송제작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위해 '방송위원회 대상' 자체 수행
  - '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으로 '방송위원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으로 변경
  - '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훈격이 대통령상으로 격상
  - '16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최우수상(총리상) 신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명
(20) 방송평가 기반조성 (3134-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평가기반조성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평가 기반조성	823	823	823	853	853	-	-

### 4. 사업목적

-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송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자 노력을 유도
- 방송사업자의 편성현황 및 방송매체 이용행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규제정비 및 효율적인 방송 정책 수립에 활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 방송법 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평가항목 및 척도)

1. 지상파방송사업자(TV)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65점/700점 만점)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질 평가(55점/600점 만점)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국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08.10.14.)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표·지수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 '00. 방송법 제정 시 방송평가 근거조항 제31조 신설
- '01. 8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 '08.10월 방송평가 결과 공개 시작
- '1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중편PP) 평가대상 추가

####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 '03.~'04. 방송평가에 시청자의 질적 만족수준 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 실시
- '05. 4월 KI 시청자 평가지수 사전 조사 실시
- '06.~ 매년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및 방송평가에 반영
- '12.~ 종합편성채널 KI 시청자 평가지수 조사 추가 및 방송평가에 반영

####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 '11.11월 「콘텐츠 경쟁력 평가 방안」 선행 연구 수행
- '12.~ 「방송평가기반조성」 내역사업으로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사업 수행

####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00.10월 「TV 시청행태 연구」로 제1회 조사 실시
- '08.10월 정부승인통계 인증(통계청 승인번호 제164002호)
- '09. 11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로 명칭 변경

####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08. (舊)방송위에서 비정기적으로 추진하다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규제별 편성현황 정리 및 발간
- '13.~ 일관된 사업형태의 진행이 필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 현행 편성규제 실효성 제고에 활용

## 6.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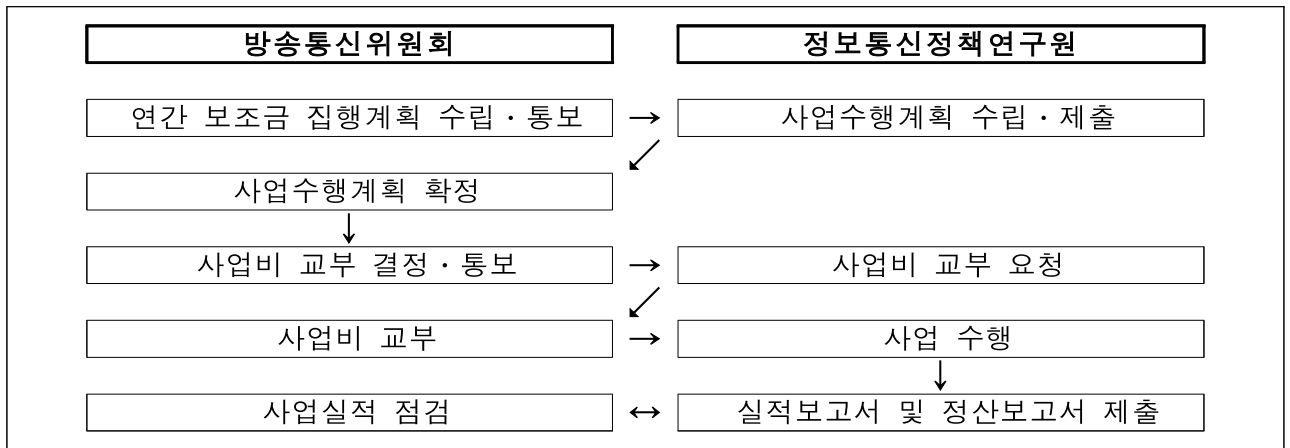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제31조(방송평가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제41조(통계의 작성 관리)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21)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3134-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03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광고공공 인프라구축지원	2,674	2,674	2,674	2,854	2,854	180	6.7

### 4. 사업목적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다양한 사회문제를 주제로 공익광고를 제작·방영하여 국민공감대 형성 및 실천의식 확산을 유도하고, 공익광고제 개최 등을 통해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고취
-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방송광고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방송광고 및 관련 자료의 DB를 구축하여 방송사, 학계, 광고계 등에 제공하고 우수 방송광고물 시상지원을 통해 방송광고의 질적 향상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추진경위

####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 '81.1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구성 및 공익광고 첫 방영
- '83. 2.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로 개편
- '88. 7.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공익광고협의회로 개편
- '00. 1. 방송법 73조제4항,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제정
- '14. 1.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익광고 제작 사업 지원

#### [광고 인프라 관리 및 자료수집·제공]

- '97. 8. 정부, 광고정보센터 구축 계획 확정
- '98.11. 광고정보센터 인터넷 서비스 개시 및 방송광고자료 DB화
- '99. 6. 광고정보센터 방문자 서비스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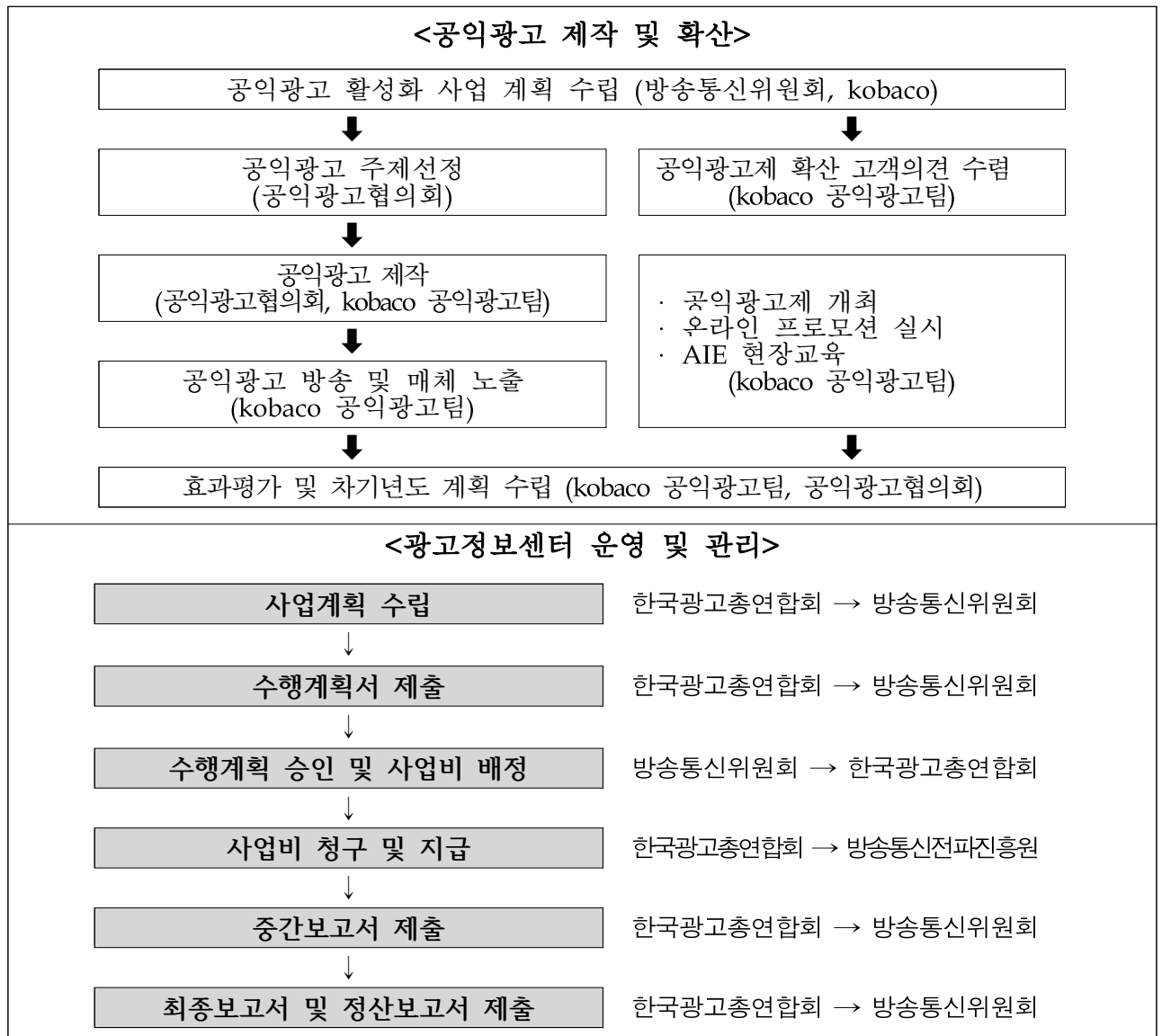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광고총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광고계 및 학계, 방송사업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등
한국광고총연합회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22)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134-31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15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혁신형중소기업방송광고활성화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혁신형 중소 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2,350	1,850	1,850	1,350	1,350	△500	△27.0

**4.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방송광고시장 외연 확대 및 활성화 유도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우수 녹색 경영·녹색인증 중소기업/IP(지식재산) 스타기업/사회적기업/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aT센터 지원기업 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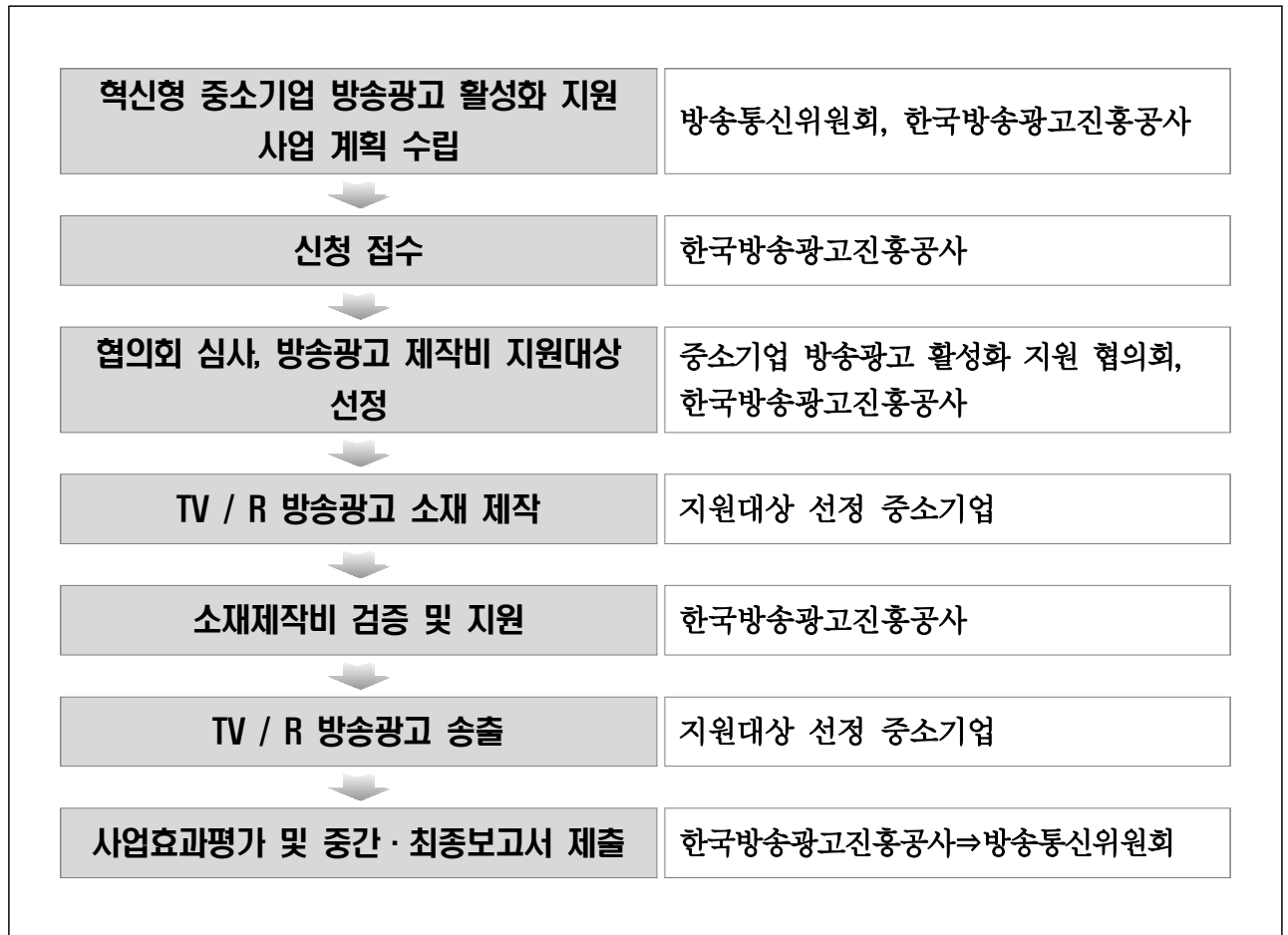
- '98. 7. 벤처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지원
- '06. 6. 이노비즈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추가 지원
- '08. 7. 메인비즈기업 송출비 할인 추가 지원
- '10. 9. 우수 녹색경영(Green-Biz)·녹색인증 중소기업 송출비 할인 추가 지원
- '14. 4. IP스타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으로 송출비 할인 확대 지원
- '15. 1.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15. 9. 사회적 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추가 지원
- '16. 5.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추가 지원
- '16. 5.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추가 지원
- '19. 3. aT 지원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추가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사,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23)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3134-31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1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방송정보활용기반체계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정보 활용기반 체계화	504	504	504	504	504	-	-

**4.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방송콘텐츠 제작·편성 및 광고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방송콘텐츠의 부가가치 제고
- 각종 방송통계 조사결과를 표준화하고, 중요 통계를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방송통계의 체계적 활용을 도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국제협력)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법 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 '16. 5월 빅데이터 기반 방송콘텐츠 이용 예측 모델 관련 정책연구 실시
- '17. 3~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18. 1~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 '18. 1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개설, 데이터 제공 개시
- '18. 12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I) 리뉴얼 오픈
- '19. 1~12월 2019년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 '20. 1~ 2020년도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사업 추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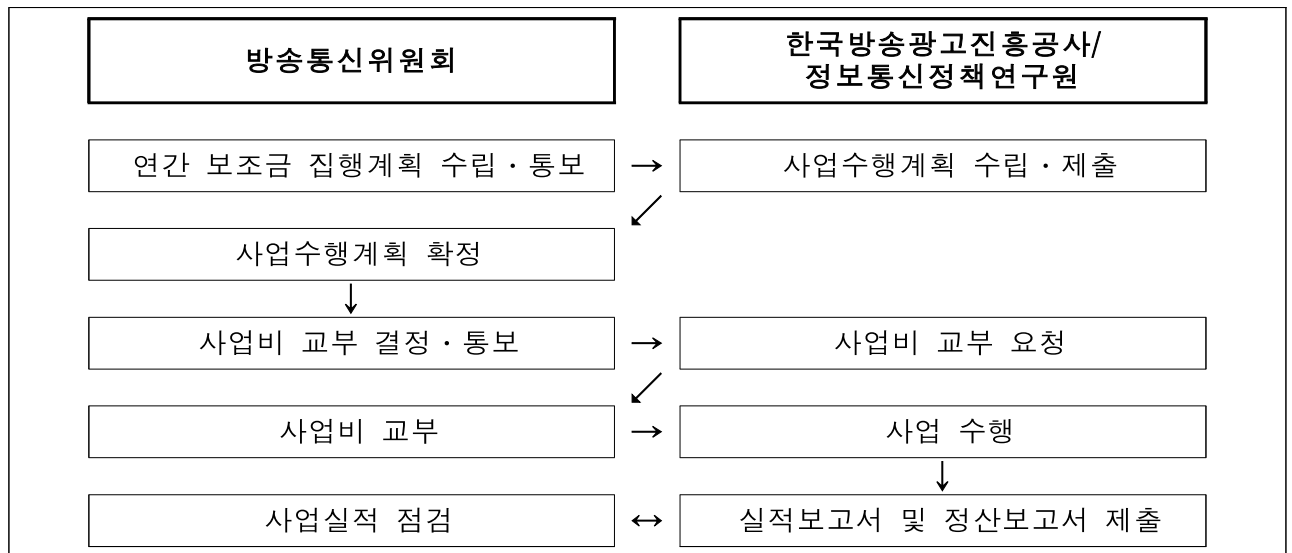
- '16. 5월 방송분야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관련 정책연구 실시
- '18. 1월 방통위 방송통계포털 서비스 개시
- '19. 1~12월 2019년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 '20. 1~ 2020년도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사업 추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지원)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10조(방송통신 지수·지표 개발) 등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24)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3134-34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기반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4	340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지역밀착형방송광고 활성화기반구축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	1,640	1,640	1,640	1,640	-	-

**4. 사업목적**

-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송광고 제작비 및 송출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방송광고를 활용한 소상공인 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지역 방송광고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 구조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 제6호, 제26조제1항제5호, 제9호

제8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26조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9조제2호, 제3호, 제6호

제18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 기반 구축·운영, 광고 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 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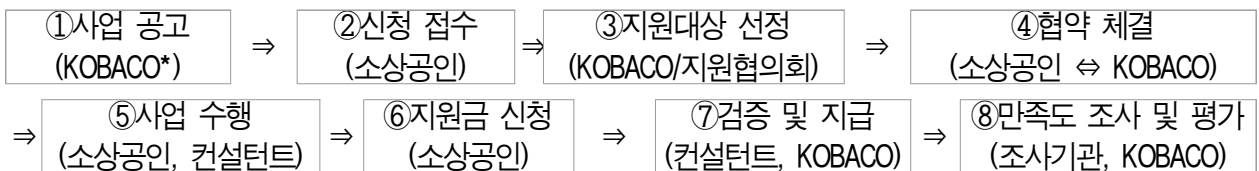
- '20. 1~ : 2020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실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사업 수혜자 :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지상파 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IPTV, 지역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등

## 7. 사업 집행절차



\* KOBACO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b>사업명</b>
(25)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3135-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기획조정관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1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융합정책연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1,997	2,300	2,300	2,300	2,300	-	-

**4. 사업목적**

- (방송통신융합 기반 정책연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방통위 주요 업무를 충실하게 지원하게 위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 수립 전 전문적인 조사·연구, 국내외 사례 파악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
- (방송통신 분야 학술행사 지원 등) 산·학·연 주관 세미나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지식 공유 기반 확대에 기여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 추진경위
  - '08년 : 사업관리 효율화·체계화(관리기관 지정),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시행
  - '13년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연구 사업을 (신)방통위와 미래부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분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0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학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신청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각 실국</li> <li>○ (접수) 정책연구심의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li> </ul>
연구과제 심의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연구심의위원회</li> </ul>
공모를 통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최소 40일 공고</li> <li>※ 수시과제는 10일 이상 공고</li> </ul>
연구자 평가 및 적격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자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공고</li> <li>○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연구수행자 선정</li> </ul>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 ⇔ 연구자</li> </ul>
연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li> </ul>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 과제담당관</li> <li>○ (심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li> </ul>
연구결과(연구보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 → 과제담당관</li> </ul>
결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과제담당관, 민간위원</li> <li>○ (심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li> </ul>
활용상황 점검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 과제담당관 (종료 후 6개월 이내)</li> </ul>

사업명
(26)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3135-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기획조정관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방송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2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방송통신국제 협력강화	1,276	3,090	2,994	2,770	2,770	△294	△7.5

### 4. 사업목적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강화)** 방송통신 규제 분야 고위급 양자 면담 및 외국 정부·국제기구와의 협력 MOU 체결 등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와 규제 분야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방송 국제기구 공동협력 사업)** 방송 국제기구에 대한 자문 등 국제기구와 협력 활동을 통해 국제기구 논의에 우리나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미디어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통상 대응체계 구축)** 방송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의 신규 통상 이슈 및 국내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통상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정치적 분야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대국민 통일의식 제고 추진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 마련 및 학술연구 등에 자료로 활용하여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마련
- **(방송공동제작 협력강화)**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정부와의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방송사업자 등 지원 정책 추진
  - FTA에 근거가 마련된 국가들과의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국내 프로그램 인정, 제작지원, 인력·장비 출입국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방송공동제작 협정 체결 추진
  - 해외방송시장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및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 한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매년 개최
- **(공동제작협정 제작지원)** 방송 공동제작협정 체결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에 필요한 직접 제작비를 지원
  - 국가 간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고자 함
- **(해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해외의 증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의 충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보급
  -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의 증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방송 콘텐츠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방송분야의 실질적 협력 도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법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3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건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제52조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협상 대표단) ① 위원장은 제11조 본문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특정 통상협상 개시에 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협상대표단을 구성하고 상대국과의 통상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정부는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따라 통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제 19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①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④ 점진적 자유화의 과정은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의 일반적수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매 협상마다 진전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 교류협력의 지원)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및 제24조(보조금 등)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24조(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 양자·다자간 국제협력 지원 >

- 주요 협력국 정부 및 해외 방송통신 국제기구·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국제 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방송통신 제도·정책 조사(2014년 8회, 2015년 15회, 2016년 19회, 2017년 19회, 2018년 20회, 2019년 21회)
- 한-불 간 방송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프랑스 시청각고등평의회(CSA)와 MoU 체결('16.6.2.) 및 국내 방송사의 프랑스 진출 지원을 위해 韓)KBS - 佛)TV5 Monde, 韓)YTN - 佛)France 24 MoU 체결 지원('16.6.2.)
- 한·EU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및 신속한 적정성 평가 진행 유도('17.11.20)
-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 및 스페인 정보보호청(AEPD) 등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 변화에 따른 서비스 규제 개선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관한 상호 협력 방안 논의('18.2.26~3.4.)
- 체코 통신위원회(CTU), 터키 문화관광부(MOC),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 및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등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 및 방송콘텐츠 교류 협력 방안 등 논의('19.3.1, 3.14, 3.28, 12.4)

#### < 국제 회의 참석 >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시아·태평양 방송통신 규제자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송통신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규제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지역 협력 증진 논의(2014.7.21.~22., 2015.8.24.~25. 2016.5.12.~13.)
-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에 참석하여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미 정부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미디어 규제 정책 관련 의제 발제('18.5.9.~5.13. '19.6.12.~13.)

#### < 방송통신 분야 통상 협상 >

- 2017년 12월 한-중 FTA, 2018년 5월 한-메르코수르(남미4개국), 2019년 11월 한-러 FTA 등 협상 개시 선언

- 2019년 11월 한-중 FTA 6차 협상, 2020년 5월/7월 한-중 FTA 6차/7차 협상
- 2019년 1월 WTO 통상장관회의,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규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 규범 논의 착수에 합의

#### < 아세안 지역 방송콘텐츠 진출 지원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회원국 간 방송분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부대행사 개최 (1차 : 2014.12.11.~12, 2차 : 2015.8.24.~25.)
- 한국과 아세안의 방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상호교류를 주선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 주관 국제 전시회인 'KL Converge'에서 한국관 운영('15.8.27~29.)
- 동남아 한류확산 및 EBS의 베트남 교육방송모델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교육방송(VTV7) 개국식 참석('16.1.8.) 및 정보미디어부(MIC)와 MoU 체결('16.5.25.)

#### < 방송한류 시장 다각화 >

-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과의 MoU 체결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반 운영 기반 마련('17.2.20~23)
- OIC 방송규제기관 포럼(IBRAF)\*에 참석 콘텐츠 교류와 글로벌 화합에 대해 발제하는 등 이슬람권으로의 한류 방송 콘텐츠 진출 기반 마련('17.2.22)
- \* IBRAF(Islamic Broadcasting Regulatory Authorities Forum) : 디지털화와 융합을 배경으로 이슬람 국가 방송 규제 당국간의 협력 증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포럼

####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 >

- 2001년 11월 구 방송위원회가 특별기구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남북 방송교류 협력 추진
- 2005년 8월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법정기구로 격상
- 2011년 11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로 통신 분야 추가·개편
- 2013년 11월 국회 미방위 예산소위시, 사업 예산 반영 추진 필요 의견 제시
- 2015년 '2015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5.10.), KBS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슈퍼 코리아의 꿈' 제작지원 및 방영
- 2016년 '2016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6.11.), KBS 명견만리,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작지원 및 방영
- 2017년 '2017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7.12.), EBS 지식채널e 남북관계를 주제로 UCC 공모전 실시 및 방영
- 2018년 '2018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8.11.), EBS 지식채널e '북한 언어 탐구생활' 등 10부작 제작 지원 및 방영
- 2019년 '2019 남북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19.10.), 특별 다큐멘터리 3부작 '샘 해밍턴의 페이스북'(SBS), 특별라디오드라마 2부작 제작지원 및 방영

**< 한·중 방송공동제작협정 추진 >**

- '14. 1. 17. : 방통위-중국 광전총국 방송분야 협력 MoU체결
- '14. 11. 10. : 한·중 FTA 체결
- '14. 11. 13. : 제1차 한·중 방송정책 라운드 테이블 개최(차관급)
- '15. 8. 27. : 한·중 방송공동제작 협의체 구성에 합의(장관급 면담)
- '15. 9. 24. : 방송공동제작 협의체 구성 관련 서한 발송(방통위)  
※ 중국측 서한 수신 : '15.10.20., 방통위 2차 서한 발송 : '15.11.2.
- '15. 11. 30. : 한·중 FTA 국회 비준
- '15. 12. 20. : 한·중 FTA 발효
- '16. 3. 4. : 한·중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북경)
- '16. 6. 30. : 한·중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서울)
- '18. 3. 2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1차 후속협상 참가(서울)
- '18.7.11~1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2차 후속협상 참가(북경)
- '18. 12. 3. : 한·중 방송콘텐츠 전문가 세미나 개최(서울)
- '19.1.15~17 : 한·중 FTA 서비스투자 3차 후속협상 참가(부산)
- '19. 7. 18 : 한·중 FTA 서비스투자 5차 후속협상 참가(서울)
- '20. 1. 29 : 중국 광전총국 및 상무부에 '한중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협상 재개 요청
- '20. 5. 28. : 한중 FTA 서비스투자 7차 후속협상 참가(세종)
- '20. 7. 22. : 한중 FTA 서비스투자 8차 후속협상 참가(세종)

**< 방송콘텐츠분야 협력강화 >**

- '16. 5. 25. : 한·베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과천)
- '16. 7. 27. : 한·베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베트남)
- '16. 11. 24. :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부산)
- '16. 12. 27. : 한·베 국장급협의체 3차 회의 개최(서울)
- '17. 2. 22. : 이슬람방송규제기관 포럼 주최 콘퍼런스(IBRAF) 참석 및 위원장 발제
- '17. 2. 23. : 한·인도네시아, 한·태국, 한·터키 방송콘텐츠 분야 MOU 체결
- '17. 2. 23. : 한·인도네시아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인도네시아)
- '17. 6. 28. : 한·베 국장급협의체 4차 회의 개최(베트남)
- '17. 9. 18. : 한·태 공동제작 활성화 회의 개최(과천)
- '17. 11. 30. :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국제포럼 개최(서울)
- '17. 12. 7. : 태국 NBTC 주최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참석(태국)

- '17. 12. 8. : 한·태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태국)
  - '18. 4. 17. : 한·베 국장급협의체 5차 회의 개최 및 협정문(안) 최종 합의 국장급 가서명(서울)
  - '18. 6. 28. : 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서울)
  - '18. 7. 27. : 한·베 공동제작협정 장관급 체결 추진 관련 실무협의(하노이)
  - '18. 8. 28. : 방통위-문화유산부 간 한·캐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국장급 협의체 발족 합의
  - '18. 9. 18. : 한·캐 국장급협의체 1차 회의 개최(캐나다)
  - '18. 12. 14. : 한·태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 개최(태국)
  - '19. 3. 26. : 한·베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양자면담(베트남)
  - '19. 3. 28. : 한·인니 KPI 양자면담(인도네시아)
  - '19. 6. 18. : 한·터키 RTUK 양자면담 및 공동제작협정 추진 MOU체결(서울)
  - '19. 6. 19.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베트남 포럼 개최(서울)
  - '19. 6. 20. : 한·인니 KPI, 한·태국 NBTC 양자면담(서울)
  - '19. 6. 19. : 2019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개최(서울)
  - '19. 6. 21. : 한·베 MIC 간 공동제작협정 이행을 위한 국장급협의체 6차 회의 개최(서울)
  - '19. 10. 1. : 한-메르코수르 FTA 후속협상 대응(부산)
  - '19. 10. 2. : 한-러 FTA 후속협상 대응(서울)
  - '19. 12. 4 : 한-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관계부처 회의
  - '20. 1. 15~16 : 한-러 FTA 후속협상 대응(러시아, 모스크바)
  - '20. 2. : '한-베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송부
  - '20. 2. : '한-터키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문(안) 초안 송부
  - '20. 3. : 한-러시아 간 방송교류 현황 산업부 전달
  - '20. 4. : 「한국-베트남 TV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해설서」 제작 및 배포
  - '20. 6. : 한-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관련 캐나다 문화유산부 질의에 대한 답변송부
- < 해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지원 >**
- 해외의 증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2020년 지원 규모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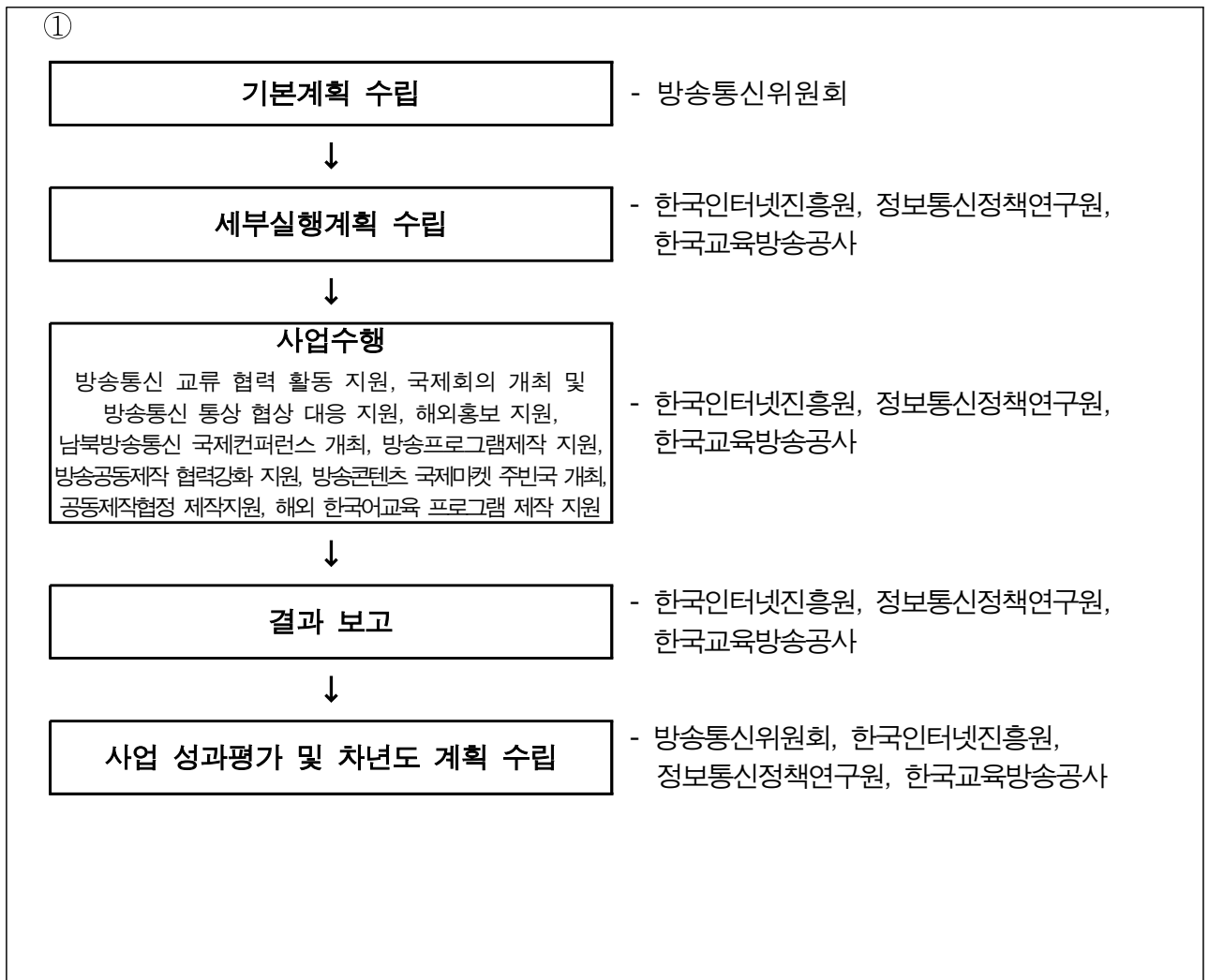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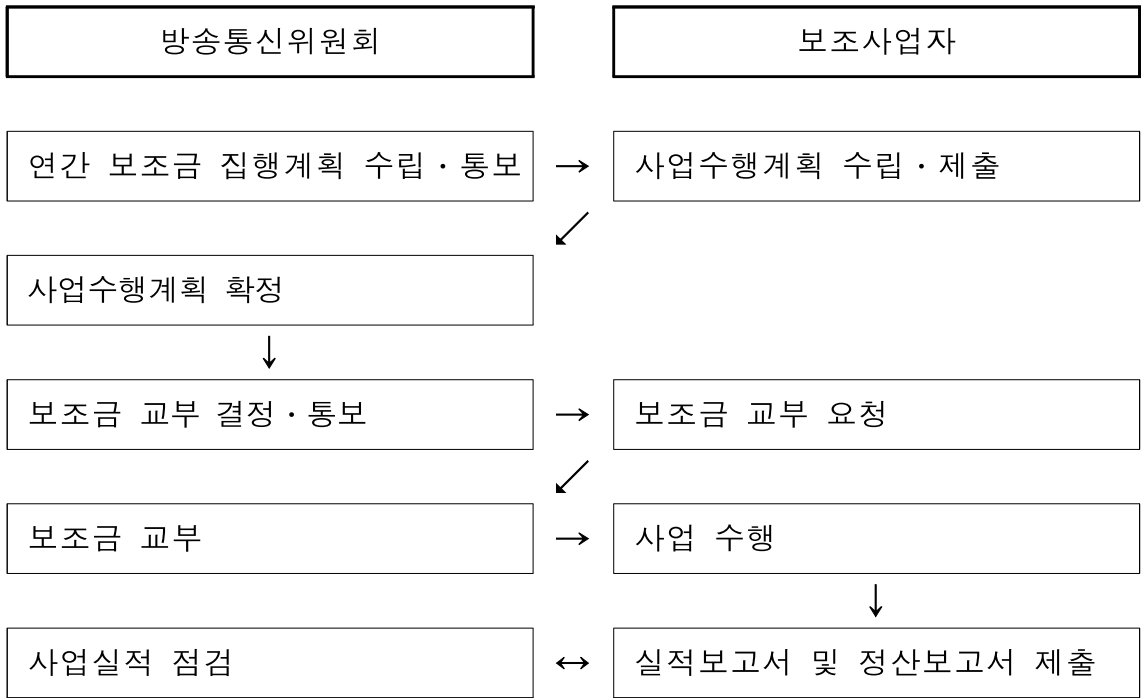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방송시청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4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방송법 제97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 23조, 26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액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 26조 대통령직속 산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요 16개 정책 제2항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비전/목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 및 제24조

## 7. 사업 집행절차



②



<b>사업명</b>
(27) 재난방송 운영지원 (3135-30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060	06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5	307
명칭	행복한방송통신환경조성	방송통신운영지원	재난방송 운영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재난방송 운영지원	-	2,783	2,783	4,020	4,020	1,237	44.4

### 4. 사업목적

- 재난방송등 주관방송사인 KBS의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한국수어 통역사 재교육 실시를 통해 한국수어 방송 확대기반 마련
- 재난방송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방송 종합상황실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사항('19. 4. 9. 14회 국무회의)

○ 재난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 강조

- '19년 강원산불 계기 재난방송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나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방송을 통해 행동 요령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지진,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인프라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2) 및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따라 재난 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재난방송 역량강화 및 역할 수행에 필요
- 수어통역사 재교육을 통한 방송현장의 전문수어통역사 수요 대응 및 긴급 재난 방송의 상시적 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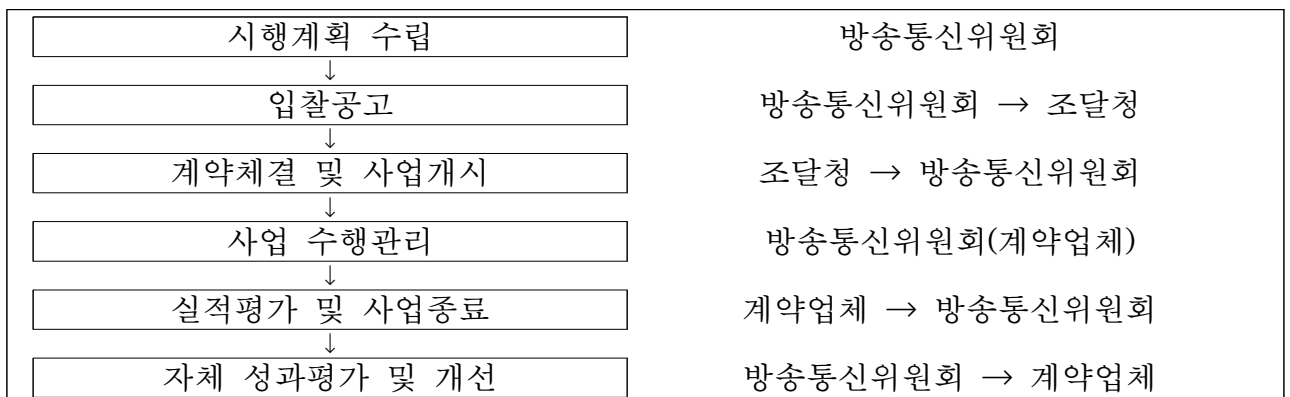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방송통신위원회(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한국방송공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제작지원 등), 시청자미디어 재단(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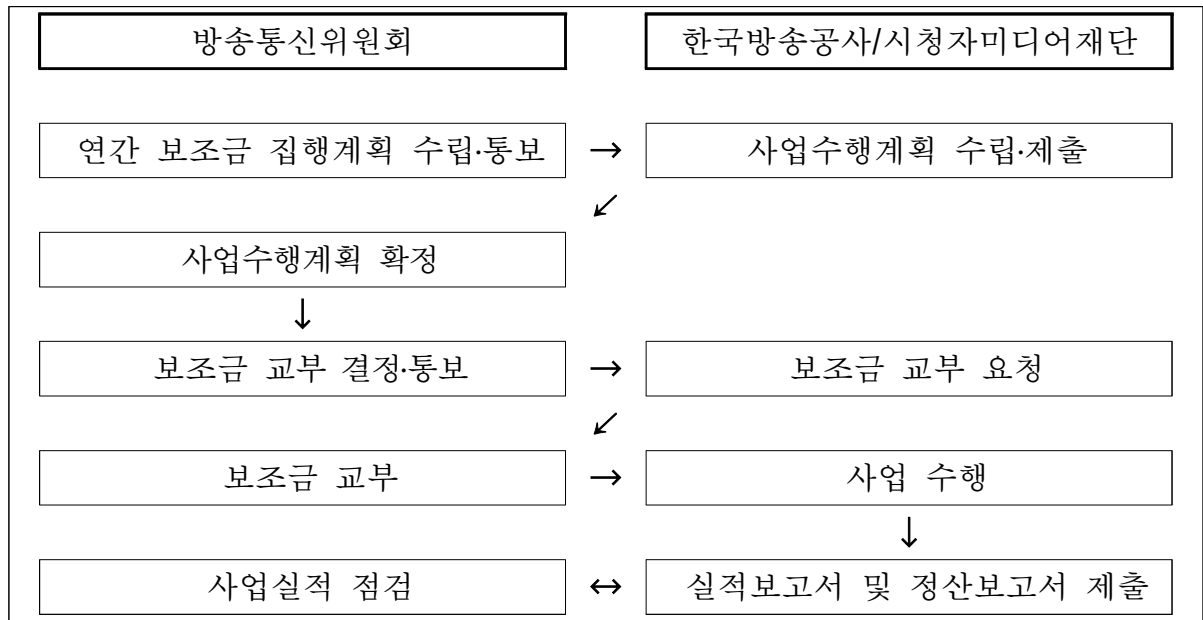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방송공사	정액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정액지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5호

## 7. 사업 집행절차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방송 제작지원 등



<b>사업명</b>
(28)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251 - 3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1,288	1,288	1,288	1,288	1,288	-	-

**4. 사업목적**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신뢰도 향상) 긴급구조 플랫폼 취약점 점검, 보안 솔루션 구축 등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 및 성능을 고도화
-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안정적 운영)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끊임없는 Wi-Fi AP(Access Point) 기반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관제 모니터링 실시
-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 긴급전화에 대한 정밀측위 시험을 통해 긴급구조 요청에 대한 전달성공률 등을 높여 구조 요청자의 생명·신체 구조 시 신속성 확보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p>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3. 공공목적을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p> <p>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

### ○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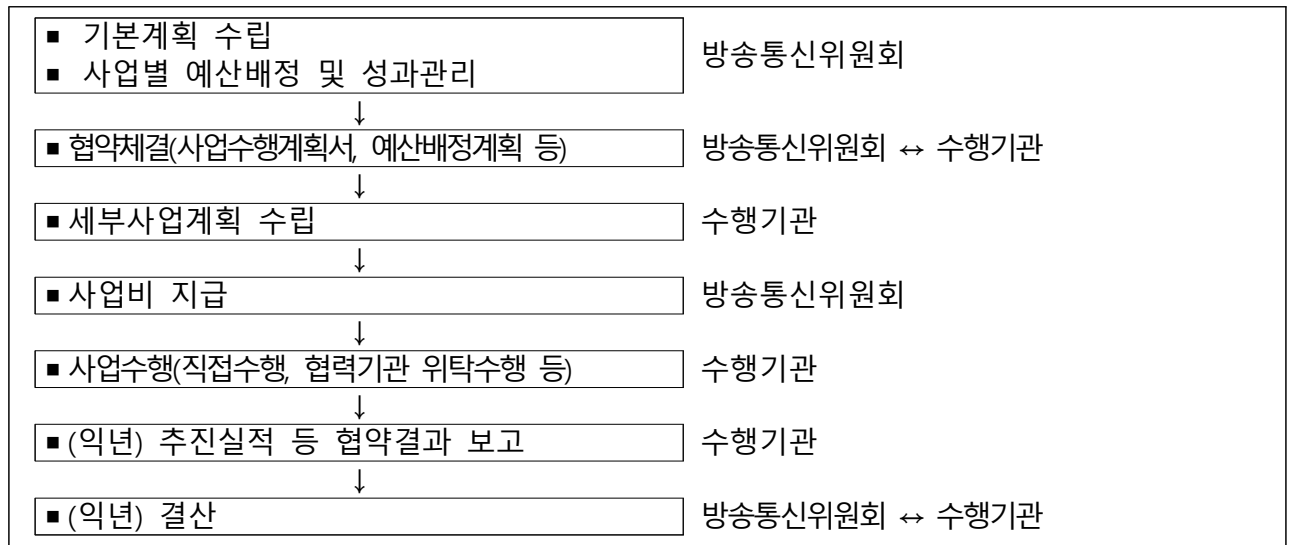
-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0.11월)
-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7대 스마트 신산업 선정('11.10월)
- 국무총리 지시사항(위치정확도 제고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국무총리실 제118회 국가정책 조정회의, '12.5월)
- 긴급구조기관 외 경찰관서에서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2.11월 시행)
- 긴급 구조를 위한 경찰청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14.12월)
-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방통위 정밀측위 시험 요구(감사원, '15.7월)
- 긴급 구조를 위한 국민안전처 위치정보 상용서비스 제공 개시('15.9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요 구조자) 및 위치정보 관련 사업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7. 사업 집행절차



<b>사 업 명</b>
(29)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 - 306)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6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225	1,315	1,315	1,415	1,415	100	7.6

### 4. 사업목적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언어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및 스마트폰 역기능 해소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인터넷방송 등 '정보통신망법' 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보호 의무, 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를 위한 청소년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이행 점검·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 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법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 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호 <생략>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 - 정보통신망법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 방송통신발전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추진경위

< 클린스마트모바일환경조성 >

- 국가정책조정회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12.3.16)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지정,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및 접근 방지 대책 강화」(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12.5.)
- 국가정책 조정회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12.10.)
- 국무회의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근본대책 마련」(13.3.13.)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13.5.22.)
- 15개 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수립 (14.12.)
-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15.8.7)
- 9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3차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종합계획 수립」(16.3~4)
- 11개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제2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16.5.)



- 9개 부처 및 9개 관계기관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16.5.)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및 100대 국정과제(70-5번 건강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관리계획) (‘17.7)
- 11개 부처 및 17개 시도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19~’21년)」(‘19.1)
- 13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제3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19~’21년)」(‘19.6)
- 10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4.23)

**< 클린인터넷서비스환경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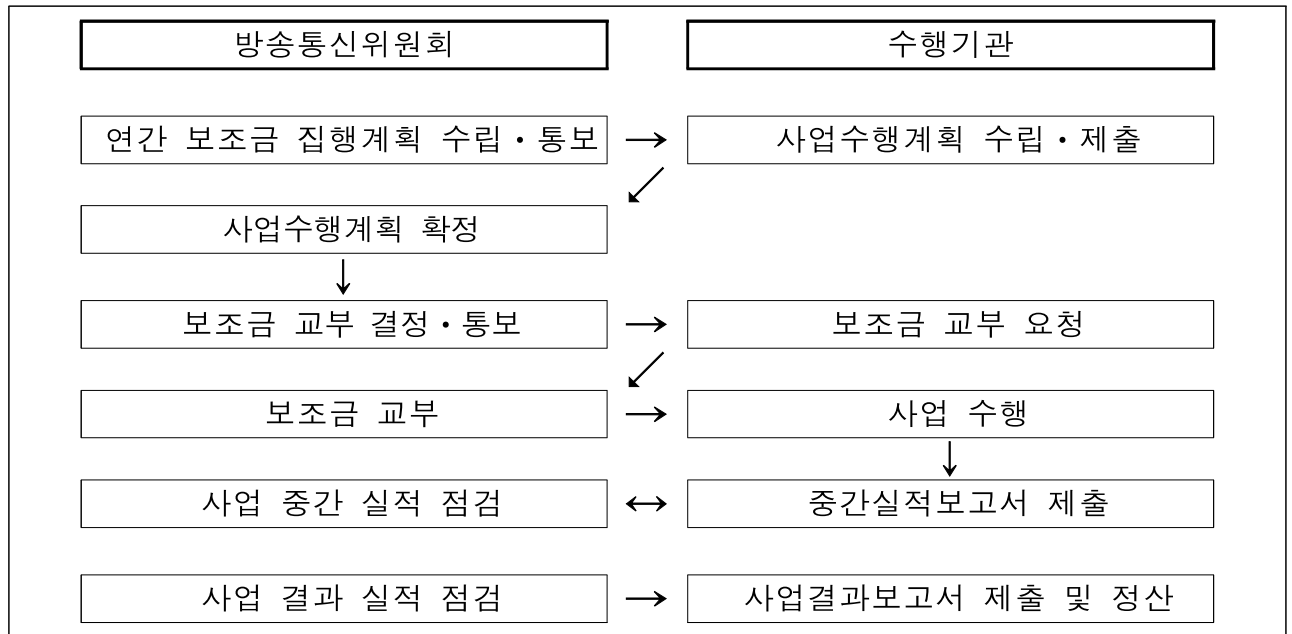
-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17.12.)
  - ※ 학회 및 단체, 협회, 업체 및 방심위, 정부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
-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 실무협의회 개최(‘18.3.)
  - ※ 방통위, 방심위,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 KISO, 인기협, KAIT 등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18.11.)
- 인터넷개인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19.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62건 (6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
- 인터넷개인방송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모니터링 및 차단조치(‘20.6., ’20.11.)
  -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제42조의2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영상물 2,169건 (11개 사업자) 성인인증 적용 또는 삭제 조치요청
-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마련(‘20.6.)
  - ※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할 유형 및 심야시간·장시간 출연 금지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3~계속, ’19~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청소년 및 학부모, 인터넷이용자 및 청소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100	정보통신망법 제41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30)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3251-30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7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4,487	5,087	5,061	5,317	5,317	256	5.1

### 4. 사업목적

- 전 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역기능 피해 예방
- 국민 참여형 공모전, 온·오프라인 홍보, 체험관 운영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 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 협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상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추진경위

- 2007년 : 건전한 UCC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 개최 및 UCC 이용자 가이드라인 발표
- 2008년 : “우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가칭)” TFT 구성
- 2009년 : ‘인터넷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조성’ 사업 신규 추진
- 2010년 :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제1기 한국인터넷드림단” 창단
- 2010년 : 제1회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선포식 및 주간 운영
- 2011년 : 대통령 업무보고, 건전한 소통과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등을 통한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
- 2012년 : 청소년 체험형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부산 궁리마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2012년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중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실시 확대” 계획 발표
- 2013년 :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근절종합 대책」 중 “인터넷윤리교육 및 캠페인 홍보 추진” 등 계획 발표
- 2013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구축(한국잡월드)
- 2013년 :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안)」 중 정규 교과를 활용한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등 포함
- 2014년 :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추진계획」 중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계획 발표
- 2015년 : 방송통신위원회,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 대책” 발표
- 2015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부산궁리마루→국립부산과학관)
- 2015년 : 사이버폭력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예방교육 확대
- 2016년 : 사업추진 전담기관 변경(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 2017년 : 인터넷윤리교육 방통위 일원화(“바람직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전한정보문화조성(범국민 정보윤리교육)”)
- 2017년 : 국정과제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실천과제 채택
- 2018년 : 인터넷윤리체험관 이전(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국립광주과학관)
- 2018년 : 취약계층 대상 인터넷윤리교육 확대(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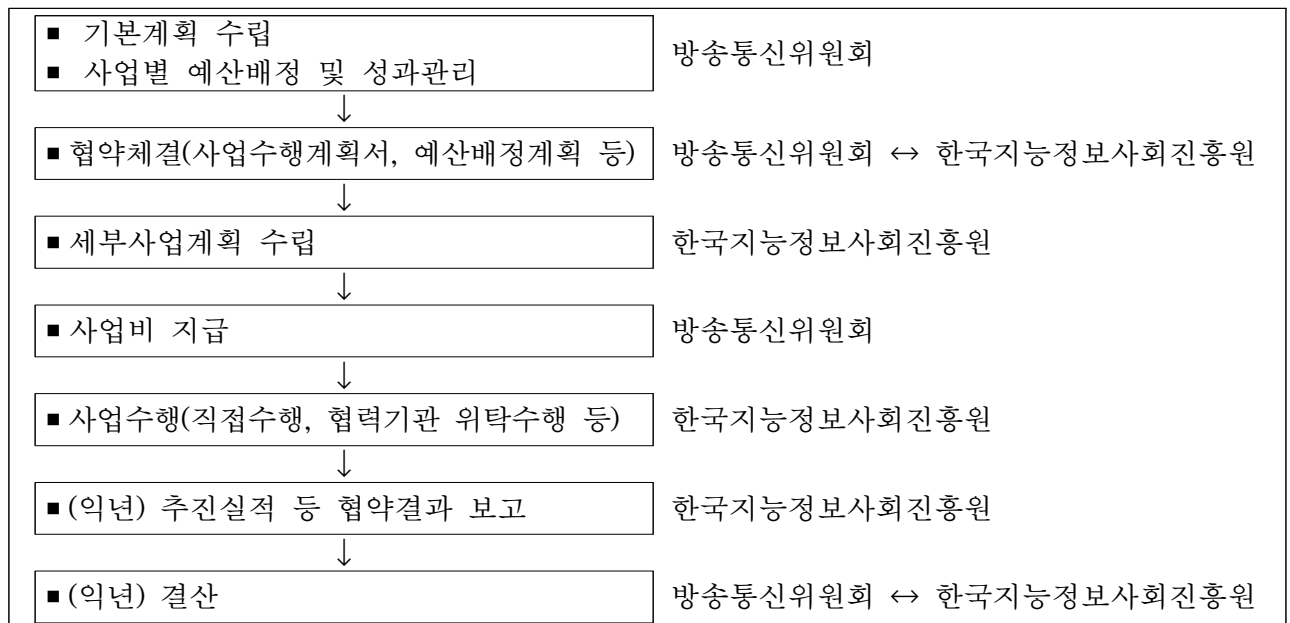
- 2019년 : 시·도 교육청 협력 청소년 대상 맞춤형 콘텐츠 개발, 국방부(군인), 여가부 (학교밖청소년) 연계 인터넷윤리 시범교육 실시
- 2019년 : 대전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 개소(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2020년 : 인터넷윤리대전 대상 대통령상 격상
- 2020년 : 서울 인터넷윤리체험관(서울시립과학관), 사이버윤리체험관 신규 개소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3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3251-30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0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	550	800	800	980	980	180	22.5

**4. 사업목적**

- 지능정보기술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미래 사회의 변화 트렌드와 이용자의 행태변화 조사·분석
-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사회의 이슈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수립
- 안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데이터 경제 주체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미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인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운영원칙) 및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제2조(운영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 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2.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 및 관련 분야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및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지능정보사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6. 정보격차의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한 지원 및 연구

7.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과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연구

9.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관련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10.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17년 방송통신위원회 연두업무계획 발표시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 역설

▶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IT기반 신산업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보호도 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

▶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확산에 따라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방송·통신 어느 분야의 규제도 받지 않는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

▶ "방송·통신 서비스의 융복합 및 새로운 기술·다양한 매체의 등장 등 방송통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리 필요"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방안 선행연구 실시('17년)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前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사업 시행('18년~))

- '19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 발표시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추어 방송통신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필요성 제시

▶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역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는 부족하고 AI 등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이용자 피해도 복잡·다양화"

▶ "AI·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AI·데이터 활용 증대에 따른 이용자 권리 및 보호원칙을 선포(11월)하고 'AI·데이터윤리

**혁신센터\*(가칭)' 설립 추진"**

\* 現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 알고리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이용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 자문, 이용자보호 미래 패러다임 연구, 정보공유 웹사이트 구축 등 기능 수행

- '20년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계획에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의 역할 및 운영 방향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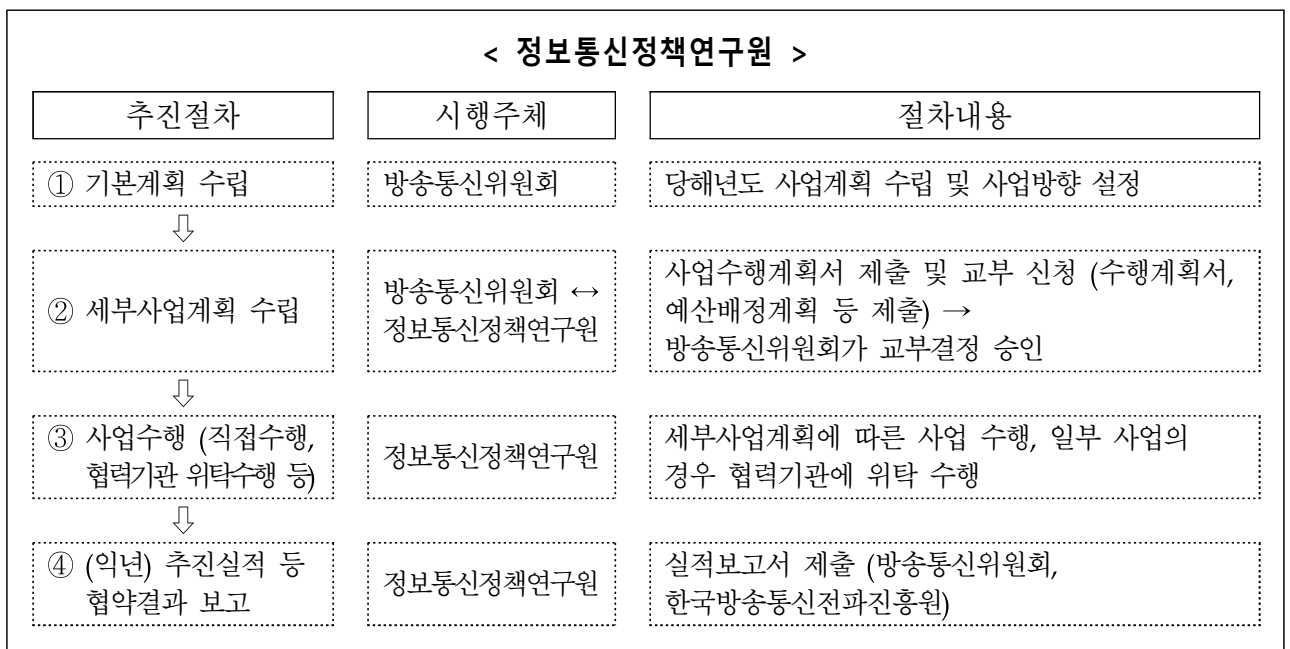
- ▶ 지능정보사회의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민관협의회 구축 등 수행
- ▶ 민관협의회 운영, 국제 공조를 통해 AI 역기능 사전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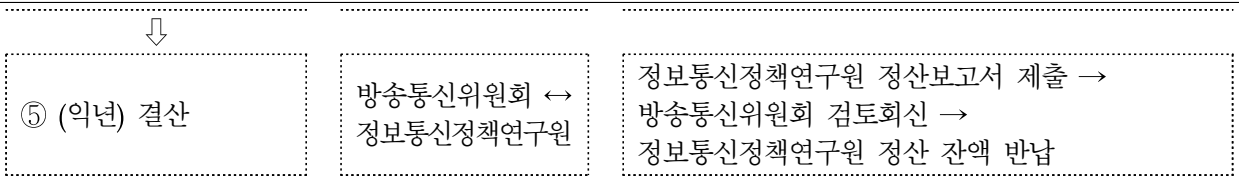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8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 / 초·중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

**7. 사업 집행절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	당해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 ↔ <b>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b>	<b>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 이 협약체결 요청 (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약 승인
③ 사업비 지급 ↓	<b>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b>	당해년도 세부사업계획 수립
④ 사업비 지급 ↓	방송통신위원회	<b>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 이 자금배정 신청 →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비 지급
⑤ 사업수행 (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 ↓	<b>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b>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 일부 사업의 경우 협력기관에 위탁 수행
⑥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b>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b>	실적보고서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⑦ (익년) 결산	방송통신위원회 ↔ <b>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b>	<b>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 정산보고서 제출 → 방송통신위원회 검토회신 → <b>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b> 정산 잔액 반납

<b>사 업 명</b>
(32)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251-31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1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	1,500	1,300	1,300	1,300	1,300	-	-

### 4. 사업목적

- 위치정보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자원으로 위치정보를 활용  
토록 하여 새로운 ICT 산업기반 마련
-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위치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특허출원, 해외 판로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위치정보 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 (위치정보 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중소·영세 위치정보 사업자가 겪는 법·제도,  
기술, 경영 분야별 애로사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컨설팅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3. 공공목적에 위한 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 등에 관한 사항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하여 공공, 산업, 생활 및 복지 등 각 분야에서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활성화 계획('10.11월)
- 방송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7대 스마트 신산업 선정('11.10월)
- 창조적 LBS 산업발전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16.1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예비사업자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 7. 사업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 수립</li> <li>■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li> </ul>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체결(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li> </ul>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사업계획 수립</li> </ul>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 지급</li> </ul>	방송통신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직접수행, 협력기관 위탁수행 등)</li> </ul>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년)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li> </ul>	한국인터넷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년) 결산</li> </ul>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b>사 업 명</b>
(33)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3251-31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4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인터넷 정보활용기반구축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832	1,129	1,129	2,765	2,765	1,636	144.9

### 4. 사업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제22조의5 등)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P2P)'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의무 및 조치 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에 대해 상시점검(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

\*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일부 부가통신사업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2조의5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1., 2017. 7. 26.>

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3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1.>

⑥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또는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

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20.6.9.)사항에 대하여 '20.12.10 시행(다만, 제22조의5제2항의 기술적 조치 관련 사항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30조의6

**제30조의3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12.8.>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법 제2조제14호가 목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정보의 제목, 특징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음란정보"라 한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
2. 사업자가 제1호에 따라 인식한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3. 사업자가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지 못하여 해당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4.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게 불법음란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발송하는 조치

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30조의6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0.12.8.>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식별해야 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2.10.시행)에 따라 시행령 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 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20.6.9.)사항에 대하여 '20.12.10 시행

#### ○ 추진경위

- ('15.4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조항 신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 ('15.9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관련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급
- ('16.1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점검 체계 구축·운영
- ('16.5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 ※ 3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총 1,470만원) 처분
- ('17.1월) 모바일 기반 웹하드의 기술적 조치 점검 체계 구축·운영
- ('17.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 ※ 디지털 성범죄 집중점검(8.14 ~ 23. 10일간) : 2,872건 삭제 및 경찰청 수사의뢰
- ('18.11월) 디지털 성범죄 유통방지 간담회 및 사업자 설명회 개최(6.12.)
- ('18.10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위반 사업자 제재 조치
  - ※ 1개 사업자 과태료(총 1,050만원) 처분 및 사업자 등록취소 요청
- ('19.1월) 정부합동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발표
  - ※ 방통위, 과기정통부,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방심위 등 7개 부처
- ('19.4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 ※ 5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2개 사업자 과태료(총 2,100만원)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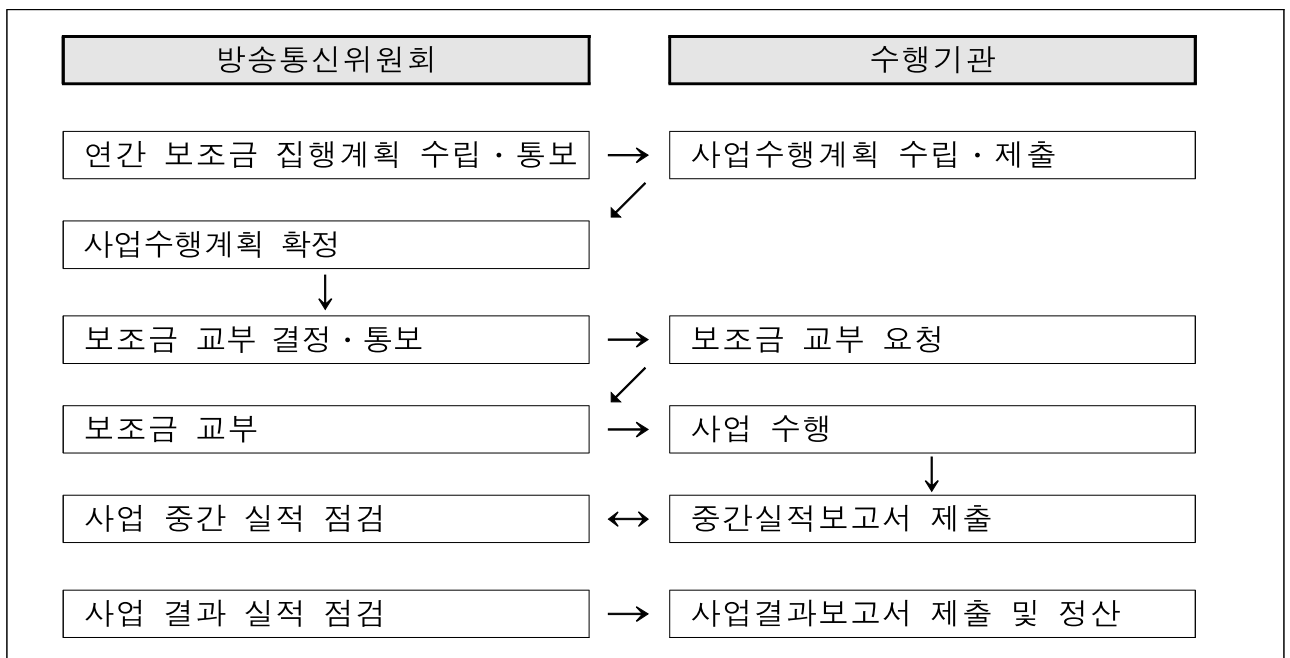
- ('19.11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업무협약
  - ※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방심위 4개 부처
- ('20.1월)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기술적 조치 위반사업자 제재 조치
  - ※ 4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태료(총 2,800만원) 처분
- ('20.4월) 정부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 '18년부터 '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의 내역사업인 '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사업(3251-306, '16년~)과 '신종사이버불법유해정보유통방지'사업(3251-312, '17년~)을 통합편성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사업 수혜자 : 인터넷 이용자, 청소년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 제4항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 7. 사업 집행절차



<b>사업명</b>
(34)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51-3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방송통신	이용자정책국		130	131
명칭	발전기금	위원회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200	3251	318
명칭	안전한 인터넷 활용기반 구축(KCC)	안전한인터넷 정보활용기반구축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신규	-	-	2,330	2,330	2,330	순증

**4. 사업목적**

- (실태점검 및 정책개발) 다양한 신유형 앱서비스 등장, 위치정보 융복합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활용 실태점검을 하고,
  -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정책개발 추진
-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도) 안전하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취약점진단 등 관리감독 수행
  - ※ 대상: 아이핀(3사), 휴대폰(3사), 신용카드(8사) + 전자서명(5사 이상)
-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모바일 신분증 등 온라인 본인확인 활용 확대에 따라 안전한 제도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법령상 근거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접근권한의 설정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위치정보법 제16조 등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 추진경위

-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11.4월)
- 방통위, 아이핀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11.9월)
-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12.2월)
- 방통위, 휴대폰 본인확인기관(3개사) 지정(‘12.12월)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17.3월)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발간(‘17.3월)
-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7개사) 지정(‘18.3~4월)
- 방통위,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1개사) 추가 지정(‘19.4월)
- 방통위, 인증서 본인확인기관(5개사) 지정(‘20.10~12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1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인터넷 이용자) 및 본인확인기관, 온라인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인터넷진흥원	1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

## 7. 사업 집행절차

